

2021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kakaobank**

목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페이지
<b>1. 지배구조 일반</b>		<b>5</b>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5
나. 지배구조 현황		6
다. 관련 규정		7
<b>2. 이사회</b>		<b>8</b>
가. 역할(권한과 책임)		8
나. 구성(이사)		10
다. 활동내역		17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26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회장 선임 사유		27
<b>3. 임원후보추천위원회</b>		<b>27</b>
가. 역할(권한과 책임)		27
나. 구성(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28
다. 선임기준		28
라. 활동내역 및 평가		30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32
<b>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b>		<b>42</b>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43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45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46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47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53
바. 사외이사 평가		53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56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56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61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61
<b>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b>		<b>63</b>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63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절차		63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64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65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65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내역		66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6
<b>6. 감사위원회</b>		<b>67</b>
가. 역할(권한과 책무)		67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7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1

라. 감사보조조직 등	77
<b>7. 위험관리위원회</b>	<b>78</b>
가. 역할(권한과 책무)	78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79
다. 활동내역 및 평가	80
<b>8. 운영위원회</b>	<b>87</b>
가. 역할(권한과 책무)	87
나. 구성(운영위원회위원)	87
다. 활동내역 및 평가	88
<b>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b>	<b>91</b>
<b>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b>	<b>91</b>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페이지
<b>1. 보수위원회</b>	<b>93</b>
가. 총괄	93
나. 구성	93
다. 권한과 책임	95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97
<b>2. 보수체계</b>	<b>101</b>
가. 주요사항	101
나. 보수 세부사항	105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06

**첨부. 관련 규정**

1. 정관
2. 지배구조내부규범
3. 이사회규정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5. 감사위원회규정
6. 위험관리위원회규정
7. 보수위원회규정
8. 최고경영자승계규정

## [대표이사 확인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7일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윤호영



카카오뱅크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1. 지배구조 일반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는 기업가치 증대와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사항들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이사회에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 상호간에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정 출신이나 특정 배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전문성이 상호간에 최대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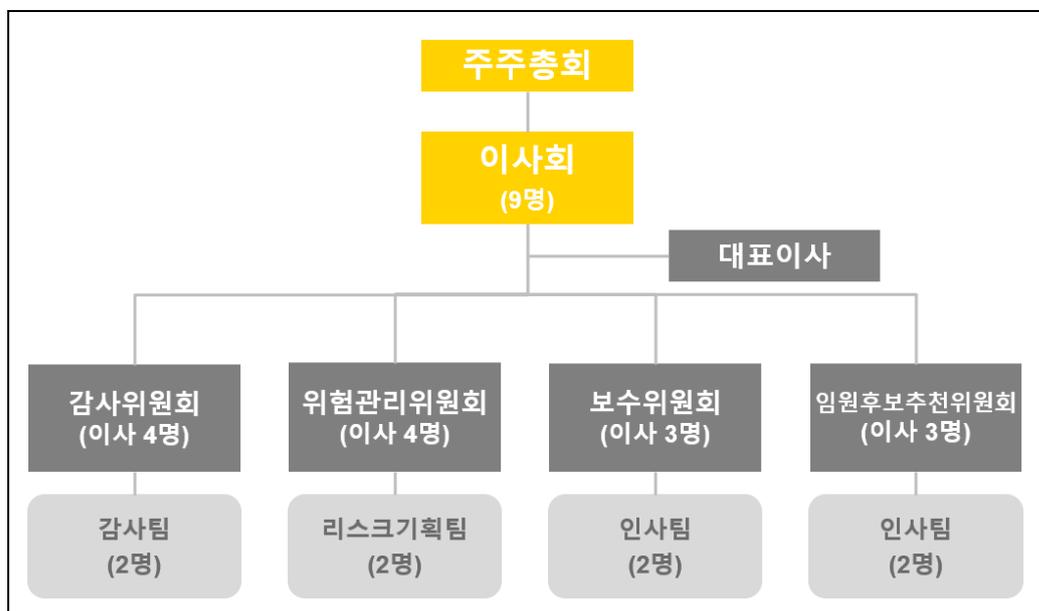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를 공시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카카오뱅크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카카오뱅크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주소: [www.kakaobank.com](http://www.kakaobank.com),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주소: [www.kfb.or.kr](http://www.kfb.or.kr))

카카오뱅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2021.12.31 기준)



주1) 지원팀 인원수는 팀장과 해당 위원회 지원 담당 팀원의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이사회는 전략팀(3명)이 지원합니다.

### (2) 지배구조의 특징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은행 내 최고이사결정기구로서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사회 구성은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두게 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정관」에 따라 2021 년말 현재 사내이사 2 명, 사외이사 6 명, 기타비상무이사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2021 년 12 월말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이사의 기능 중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일부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하며 해당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들은 모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위원 중 반드시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 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보수체계에 리스크 관리 측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후보 추천 시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후보군 자격검토와 같은 사외이사 후보 관리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규정
이사회	주요경영사항 검토/의사결정	6/9	김주원(비상임)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2/3	윤웅진(사외)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감사업무 관련 총괄	4/4	오평섭(사외)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감사위원회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위험관리 관련 정책/제도 수립 및 의사결정	3/4	신보선(사외)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평가, 보상 관련 정책/제도 수립 및 의사결정	2/3	황인산(사외)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보수위원회규정

다. 관련규정 등

- 첨부 1. 정관
- 첨부 2.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 3. 이사회규정
-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5.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6. 위험관리위원회규정
- 첨부 7. 보수위원회규정
- 첨부 8. 최고경영자승계규정

## 2. 이사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 총괄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건전경영을 기초로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합니다(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제 1 호,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 제 4 호 및 제 11 조 제 3 항 제 1 호).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2022 년 경영목표·전략은 2021 년 12 월 28 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규제,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서비스의 본격화에 따른 금융 플랫폼 주도권 경쟁, 상장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변화 등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출시, 중저신용자대출 확대, 마이데이터 허가 준비 및 서비스 출시 등 모든 사업을 카카오뱅크만의 '재해석을 통한 차별화'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인받은 경영목표·전략은 분기별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경영성과 분석'의 형태로 보고되고 있으며, 2022 년 경영계획 분기별 실적은 2022 년 4 월, 7 월, 10 월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 나) 정관 변경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2 호,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2021 년 3 월 3 일에 개최된 제 3 차 이사회에서는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반영,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내용 반영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의 변경 및 운영위원회 폐지 사항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의결하였고, 2021 년 3 월 30 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정관변경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 연차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제 3 호,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 제 3 호, 제 5 호).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개최된 제 14 차 이사회에서 2022 년도 예산에 대해 경비예산 4,063 억원, 자본예산 900 억원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2020 년 결산안에 대해 2021 년 1 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1 년 2 월 3일 개최된 제 2 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21년 3월 3일 개최된 제 3 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2021 년 3 월 30 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카카오뱅크 홈페이지(www.kakaobank.com)에 공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은행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도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4 호,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제 4 호,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 제 10 호).

##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해서도 감독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제 5 호,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 제 24 호).

내부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내부통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내규들의 제·개정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감사팀(IA 팀)의 감사활동,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감시활동,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모두 보고받습니다. 2021년에는 제 3 차 이사회에서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제 8 차 이사회에서의 내부통제기준 개정, 제 11 차 이사회에서의 금융소비자내부통제 및 보호 기준 제정과 같이 내부통제 관련 내규들의 제·개정이 있었으며, 그 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준법감시인 활동 계획 등의 보고가 수행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이사회 등의 활동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경영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준의 수립과 평가와 관련해서도 감독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제 5 호,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 제 25 호).

카카오뱅크의 위험관리기준은 모두 내규화 되어있어 해당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지게 됩니다. 이사회는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이사회 내 조직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리스크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이를 구성하여 전체 위험관리기준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자 위험관리협의회를 보조 회의체로 두고 있으며, 해당 회의체의 운영기준 및 운영 내용은 위험관리위원회가 감독합니다.

##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수립·평가하고, 이를 내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 15조 제 1항 제 6호, 정관 제 45조 제 1항 제 6호). 해당 내용은 동 연차보고서에 첨부된 정관 등 내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1 년에도 이사회에서 이사회규정을 포함한 이사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변화하는 환경 및 제도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원칙과 정책을 상시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2021년 총 두 차례 이사회규정 개정을 결의하였고, 동년 3월 30일 개최된 제 4 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1일 개최된 제 13 차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승계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대주주· 임원 등과 은행 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7 호, 정관 제 45 조 제 1 항 제 7 호,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 제 22 호).

카카오뱅크가 (주)카카오를 비롯한 주요주주 등과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법 398 조 및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 제 22 호에 따라 이사회 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21 년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총 12 번의 이사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이와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그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준법감시/법무팀의 사전검토의견을 참고합니다.

카카오뱅크 이사회가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를 보류시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해상충의 소지가 해소되었을 때 다시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지도합니다. 만약 이해상충의 소지가 해소될 수 없는 건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결”로 처리하여 해당 거래를 제한합니다.

#### 아) 기 타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정관 제 45 조 제 1 항 제 8 호). 기타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 연차보고서에 첨부된 카카오뱅크의 내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구성(이사)

#### (1) 총괄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4 인 이상 12 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 중 사외이사는 3 인 이상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정관 제 35 조), 이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지배구조법에 부합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이사회는 2020 년말 기준 총 10 명이었으나, 사외이사 이계순, 이상원, 김진일, 진재욱이 사임 및 퇴임하였고 2021 년 3 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진웅섭, 오평섭, 최수열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 년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이사회는 총 9 명으로, 사내이사

2 명과 사외이사 6 명, 기타비상무이사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 년으로 정하며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2 년(연임 시에는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정관 제 38 조).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 재임기간이 6 년으로 제한됩니다(정관 제 38 조 제 5 항).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정관 제 36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 및 제 8 조) 현재 카카오뱅크의 이사회 구성원들은 해당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요건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 36 조(이사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1 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만, 당행 이사로 선임된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그 외 관련법령에 따른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② 당행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당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자를 제외한다)

2. 그 외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있는 자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7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행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사의 직을 잃는다. 다만, 제 7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당행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람
- 제 8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 1 호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당행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당행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당행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당행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당행에서 6 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당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9 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당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당행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판단과 이사회 자문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에 더불어 사외이사의 자격으로 공정성, 윤리성, 충실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균형 잡힌 이사회 운영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2021 년 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분야 5 명, 경영분야 3 명, 경제분야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외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술하면 진웅섭 이사는 경제와 금융 전문가이며, 신보선 이사는 위험관리, 오평섭 이사와 황인산 이사는 금융, 최수열 이사는 회계, 윤웅진 이사는 투자분야의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이사회장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관 제 40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6 조, 이사회규정 제 7 조).

카카오뱅크는 다년간 금융 및 경영전문가로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여온 김주원 기타비상무이사를 2021 년 3 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김주원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 중 진웅섭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사외이사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회회장 김주원

- 직위: 이사회회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보수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20. 3. 30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20. 3. 30)
- 경력
  - 전 카카오 부회장
  -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 전 한국투자운용지주 대표이사 사장
  - 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사장

나) 사외이사 이계순

- 직위: 선임사외이사, 보수위원회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19. 1. 3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18. 12. 21)
- 경력
  - 전 우체국금융개발원장
  - 전 지식경제부 서울체신청장

다) 사외이사 이상원

- 직위: 감사위원회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20. 3. 30 부터 1 년(최초 선임일 2016. 12. 23)
- 경력
  - 전 국민은행 WM 부행장
  - 전 국민은행 신사업 부행장

라) 사외이사 김진일

- 직위: 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19. 1. 3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18. 12. 21)

주) 김진일 사외이사의 기존 임기는 2019. 1. 3 부터 2 년간이며, 정관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되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2021. 3. 4 자로 사임함

- 경력
  - 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코노미스트

**마) 사외이사 윤웅진**

- 직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21. 3. 30 부터 1 년(최초 선임일 2018. 12. 21)
- 경력
  - 현 인사이트에쿼티파트너스 사장
  - 전 큐브벤처파트너스 사장

**바) 사외이사 진재욱**

- 직위: 보수위원회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19. 1. 3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18. 12. 21)  
주) 진재욱 사외이사의 기존 임기는 2019. 1. 3 부터 2 년간이며, 정관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되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2021. 3. 4자로 사임함
- 경력
  - 전 UBS Asset Management(싱가포르) 대표이사
  - 전 하나유비에스 자산운용 대표이사

**사) 사외이사 신보선**

- 직위: 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 보수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20. 3. 30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20.3. 30)
- 경력
  - 전 서울보증보험 전무
  - 전 서울보증보험 상무

**아) 사외이사 황인산**

- 직위: 보수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20. 3. 30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20.3. 30)
- 경력
  - 전 딜라이브 사내이사(감사)
  - 전 하나은행 부행장

**자) 사내이사 김광옥**

- 직위: 부대표, 위험관리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20. 3. 30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20.3.30)
- 경력
  - 전 한국투자파트너스 전무이사
  -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차) 사내이사 윤호영**

- 직위: 대표이사
- 이사 임기: 2021. 3. 30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16.12. 23)
- 경력
  - 전 카카오 모바일뱅크 TFT 부사장
  -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부문장

**카) 선임사외이사 진웅섭**

- 직위: 선임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21. 3. 30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21.3. 30)
- 경력
  - 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
  - 전 금융감독원장
  - 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타) 사외이사 오평섭**

- 직위: 감사위원회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21. 3. 30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21.3. 30)
- 경력
  - 전 KB 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 전 KB 국민은행 고객전략그룹 부행장

**파) 사외이사 최수열**

- 직위: 감사위원회위원, 위험관리위원회위원
- 이사 임기: 2021. 3. 30 부터 2 년(최초 선임일 2021.3. 30)
- 경력
  - 현 삼도회계법인 파트너

-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

(3) 요약

성명	상임/사외	직위 <sup>1)</sup>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sup>2)</sup>	재임기간 <sup>1)</sup>	담당위원회 <sup>1)</sup>
김주원	비상임	이사회회장	위의 세부 경력 사항 참조	'20.3.30	'22.3.29	21 개월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계순	사외	선임사외이사		'18.12.21	'21.1.2	27 개월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상원	사외	감사위원장		'16.12.23	'21.3.29	51 개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진일	사외	위험관리위원장		'18.12.21	'21.1.2	26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윤웅진	사외	임원후보 추천위원장		'18.12.21	'22.3.29	36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진재욱	사외	보수위원장		'18.12.21	'21.1.2	26 개월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신보선	사외	위험관리위원장		'20.3.30	'22.3.29	21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황인산	사외	보수위원장		'20.3.30	'22.3.29	21 개월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김광옥	상임	부대표		'20.3.30	'22.3.29	21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윤호영	상임	대표이사		'16.12.23	'23.3.29	60 개월	-
최수열	사외	-		'21.3.30	'23.3.29	9 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오평섭	사외	감사위원장		'21.3.30	'23.3.29	9 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진웅섭	사외	선임사외이사		'21.3.30	'23.3.29	9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주1) 2021년말 기준. 단, 2021년 중 사임한 이사들은 사임 시점 기준

주2)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가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됨. 단, 김진일 이사, 진재욱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해당 주주총회 이전인 '21.3.4 에 사임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카카오뱅크는 2021 년도에 총 14 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1 년말 기준 재직이사들의 이사회 평균 참석률은 10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87건으로, 결의안건 62건, 보고안건 25건입니다. 결의안건 62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회의 별 안건 등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의 회차별 회의개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21년 제1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 13:00
- 안건 통지일 :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기간 단축 (2021년 1월 1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상원	이계순	윤웅진	김진일	진재욱	신보선	김주원	황인산	윤호영	김광욱		
1. 이사 성명	이상원	이계순	윤웅진	김진일	진재욱	신보선	김주원	황인산	윤호영	김광욱		
2. 참석여부	참석											
3. 결의안건												
체크카드 단기상품주택의 운영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찬성	가결										
위험관리기준 개정 건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내부통제 고도화 프로젝트 결과 보고	의견 없음											
2020년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준법감시인 연간 활동 결과 보고	의견 없음											
2021년 준법감시인 연간 활동 계획 보고	의견 없음											

• 2021년 제2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2월 3일 (수) 11: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	----------	--	--	--	--	--	--	--	--	--	----------

1. 이사 성명	이상원	이계순	윤웅진	김진일	진재욱	신보선	김주원	황인산	윤호영	김광욱	
2. 참석여부	참석										
3. 결의안건											
제5기(20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찬성	가결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 정보관리업)추진	찬성	가결									
2021년 기부금 운영 한도 설정 및 운영 계획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0년 기부금 운영 현황 보고	의견 없음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견 없음										

• 2021년 제3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3월 3일 (수) 13:30
- 안건 통지일 : 2021년 2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이상원	이계순	윤웅진	김진일	진재욱	신보선	김주원	황인산	윤호영	김광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결의안건											
주요 주주와 당행 간의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채권발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정관 일부 변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운영지침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심의 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원퇴직급여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원보수규정 개정	찬성	가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찬성	가결									
<b>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b>											
2019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의견 없음										
2020년 개인신용정보 보호 상시평가 결과 보고	의견 없음										
2020년(제5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	의견 없음										

• 2021년 제4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3월 30일 (화) 13: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3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b>3. 결의안건</b>										
이사회 의장(선임사의 이사)선임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운영위원회규정 폐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주주와 당행 간의 거래 사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b>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b>										
2020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대한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2021년 제5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4월 29일 (목) 11:00
- 안건 통지일 :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단축 (2021년 4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2. 참석여부	참석										
3. 결의안건											
고객센터 서류검토 업무위탁계약의 건	찬성	가결									
고객센터 신규오피스 구축과 유지관리계약의 건	찬성	가결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찬성	가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1년 경영계획 1분기 실적 보고	의견 없음										
중저신용대출 확대계획 보고	의견 없음										
2020년 재산상 이익제공현황 및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의견 없음										

• 2021년 제6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6월 7일 (월) 10:00
- 안건 통지일 :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단축 (2021년 6월 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결의안건											
중저신용자 26주적금 이자2배 프로모션(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중신용대출 증대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위한 이자 캐시백 프로모션(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	--	--	--	--	--	--	--	--	--	--

• 2021년 제7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 11:30
- 안건 통지일 : 2021년 6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결의안건											
중·저신용자 여신 확대를 위한 개인사업자 CB사 출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8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 14: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6월 18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결의안건											
체크카드 단기상품혜택의 운영(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주주 등과 당행 간의 거래 사전 승인 I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주주 등과 당행 간의 거래 사전 승인 II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주주 등과 당행 간의 거래 사전 승인 III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중저신용자 26주적금 이자2배 프로모션(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기타임원보수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내부통제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중저신용자대출 확대에 따른 영향 보고	의견 없음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	의견 없음									

• 2021년 제9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6월 28일 (월) 10:00
- 안건 통지일 :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단축 (2021년 6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결의안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기업공개 관련 인수계약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10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7월 29일 (목) 09:30
- 안건 통지일 : 2021년 7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결의안건										
중신용대출 증대를 위한 이자 캐시백 프로모션(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주주 등과 당행 간의 거래 사전 승인 I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요 주주 등과 당행 간의 거래 사전 승인 II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이사회 운영 및 절차 개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임원보수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수위원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1년 경영계획 2분기 실적 보고	의견 없음									
-------------------------	----------	----------	----------	----------	----------	----------	----------	----------	----------	----------

• 2021년 제11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8월 30일 (월) 10: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8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욱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욱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결의안건										
주요 주주와 당행 간의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중신용대출 증대를 위한 이자 캐시백 프로모션(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고객센터 협력사 ASP계약 추가 확대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서울오피스(고객센터) 사무공간 이전 및 구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금융소비자내부통제 및 보호 기준 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12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 10: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0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욱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욱	
2. 참석여부	참석									
3. 결의안건										
2021년 경비예산 예비비 사용 및 추가경정예산(안)	찬성	가결								
개인사업자 CB사 출자구조 변경(안)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2021년 경영계획 3분기 실적 보고	의견 없음									

자금세탁방지 공중합박자금조달금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검토 및 평가 결과 보고	의견 없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행 현황 특별점검 결과 보고	의견 없음									

• 2021년 제13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12월 21일 (화) 11:00
- 안건 통지일 :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단축 (2021년 12월 2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욱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욱	
2. 참석여부	참석									
3. 결의안건										
2022년 주요주주 등과 회사간의 거래 사전승인	찬성	가결								
주요 주주 등과 당행 간의 거래 사전 승인 I	찬성	가결								
주요 주주 등과 당행 간의 거래 사전 승인 II	찬성	가결								
주요 주주 등과 당행 간의 거래 사전 승인 III	찬성	가결								
판교오피스 사무공간 이전 및 신규 구축	찬성	가결								
2021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찬성	가결								
체크카드 단기상품혜택의 운영(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찬성	가결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운영지침 개정	찬성	가결								
대표이사 승계계획(안) 심의 및 의결	찬성	가결								
4.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보고	의견 없음									
2022년 준법감시 연간 활동 계획 보고	의견 없음									
내부통제 고도화 이행현황 점검 이사회	의견 없음									

보고										
내부감사결과보고	의견 없음									
2021년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보고	의견 없음									
대외감사결과보고	의견 없음									
2021년 제도이행 평가결과 보고	의견 없음									

• 2021년 제14차 이사회

- 개최일시 : 2021년 12월 28일 (화) 10:00
- 안건 통지일 :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단축 (2021년 12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1. 이사 성명	윤웅진	신보선	황인산	진웅섭	최수열	오평섭	김주원	윤호영	김광옥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결의안건											
2022년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2년 예산편성(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1년 경비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1) 이사회 평가

카카오뱅크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가 법령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은행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설문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점검항목에는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선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며 평가결과는 주주총회에 보고되어 당해년도 이사회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이사회나 위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각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방식으로 실시됩니다. 평가구분은 자기평가, 이사회 구성원간의 상호평가, 그리고 지원부서평가 3종류로 구분됩니다.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의 평가항목은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및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부서평가는 이사회 운영상 사외이사의 참여 및 지원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사외이사 평가결과는 주주총회에 보고되고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해당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회장 선임 사유

카카오뱅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회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회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이사회회장으로 김주원 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김주원 이사가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2021년 3월 30일 제4차 이사회에서 진웅섭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금융 및 경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면서 금융감독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깊은 식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카카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 역할에 대해서는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2조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예비 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한 후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당행의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정관에 따라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당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별 경험과 전문지식 보유 여부 및 직무 공정성, 윤리의식, 책임성, 성실성 등을 점검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주주와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행의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 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 총괄**

카카오뱅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인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1명을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6.6%이며,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출함에 따라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sup>1)</sup>
윤웅진	사외이사	위원장	2021.3.30	2022.3.29
진웅섭	사외이사	위원	2021.3.30	2023.3.29
김주원	비상임이사	위원	2021.3.30	2022.3.29
이계순	사외이사	위원	2019.1.3	2021.1.2 <sup>2)</sup>
이상원	사외이사	위원	2020.3.30	2021.3.29 <sup>2)</sup>
김광옥	상임이사	위원	2020.3.30	2021.3.30 <sup>3)</sup>
윤호영	상임이사	위원	2019.1.3	2021.1.2 <sup>2)</sup>

주1)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됨  
 주2) 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주총까지 연장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시에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하며, 이계순 이사, 이상원 이사, 윤호영 이사의 임기는 2021.3.30까지 연장됨  
 주3) 김광옥 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1.3.30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서 사임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6조에 따라 당행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당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성 중심의 경험(Experience), 탁월하고 일관성 있는 성과(Business Performance), 리더로서의 종합적인 역량(Competency)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외이사는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춰야 하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전문성)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직무 공정성)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윤리성 및 책임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성실성) 당행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지배구조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 (2) 후보 추천 절차

카카오뱅크는 당행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 선임을 위하여 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내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대상을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의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을 본인 소명과 소속기관 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임원 후보에 대한 자격 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보고를 거쳐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이사회가 정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각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년도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연1회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지원부서 평가의 3가지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는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의 5가지 영역에 대해 5등급의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지원부서 평가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현황, 의견 개진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활동 참여도와 경영조언 및 지원 노력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임직원 면담조사를 통해 실시합니다.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는 사외이사 전원에 의한 설문평가로 이루어지며 지원부서평가는 이사회 지원부서(전략팀)에서 진행합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출석률은 100%입니다. 기간 중 부의 안건은 총 10개였으며 결의 안건은 10개로 모두 가결되었고,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월 14일 개최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가 2021년 정기주주총회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지배구조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포함한 등기임원 선임 일정 및 절차(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6일 개최한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면밀한 논의와 심의를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윤웅진(연임), 오평섭, 진웅섭을 감사위원 후보자로 윤웅진(연임), 오평섭을 추천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로 최수열을 추가로 추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윤웅진 후보자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결의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감사위원 후보 추천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당행 내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30일 개최한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사외이사인 위원들 중 윤웅진을 호선에 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당행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검증 본연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도화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8일 개최한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대표이사 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는바, 차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앞서 관련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심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식견,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하여 차기 이사회 보고에 앞서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을 사전심의 검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21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 14:30~15:00
  - 안건통지일 :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	----------	------

이사 성명	윤웅진	이계순	이상원	윤호영	김광옥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b>결의내용</b>						
안건1. 등기임원 선임 일정 및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2월 16일 (화) 13:30~14:30

- 안건통지일 : 2021년 2월 10일(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사 성명	윤웅진	이계순	이상원	윤호영	김광옥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b>결의내용</b>						
안건1.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건2. 감사위원 후보 추천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건3.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찬성	가결

• 2021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2월 24일 (수) 17:00~18:00

- 안건통지일 :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사 성명	윤웅진	이계순	이상원	윤호영	김광옥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b>결의내용</b>						
안건1. 사외이사 후보 추가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건2. 감사위원 후보 추가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3월 30일 (화) 15:00~15:30

- 안건통지일 :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사 성명	윤웅진	진웅섭	김주원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b>결의내용</b>				

안건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할 자의 선임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가결
안건2.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2월 8일 (수) 11:00~12:00
- 안건통지일 :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이사 성명	윤웅진	진웅섭	김주원	-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b>결의내용</b>				
안건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현황 점검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안건2. 대표이사 승계 계획의 적정성 검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의 목적은 당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당행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위 목적을 위해 이사회가 매년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의 적정성, 구성원 간 전문성 및 특성이 고려된 의사소통,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 기록에 기반한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점검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주도하되, 일부 업무에 한하여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주주총회에 보고되어 당해 년도 이사회 활동에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 1) 성명 : 윤호영
- 2) 출생연도 : 1971년

3) 출신학교 : 한양대 경영학 학사

4) 경력

2003~2008 ERGODaumdirect 경영기획팀장

2009~2014 다음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부문장

2014~2016 카카오 모바일뱅크 TFT 부사장

2016~현재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 (나) 후보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카카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윤호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금융과 IT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과 IT가 결합하는 미래 금융산업 환경에 필요한 남다른 통찰력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윤호영 후보자가 카카오뱅크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후 유례없는 성장과 빠른 흑자 달성을 견인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로 단기간에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과 IT의 융합전문가로서 국내 모바일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금융소비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데 앞장서는 등 카카오뱅크가 혁신의 대명사로 금융 산업을 선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후보자 윤호영은 날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카카오뱅크의 차별화된 혁신 역량과 지속 성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자로 판단되는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윤호영 현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 경로

당행의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1년 2월 16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추천되었습니다.

####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 후보자 윤호영은 관련법령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 자격요건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6조에 따라 당행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당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의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성 중심의 경험(Experience), 탁월하고 일관성 있는 성과(Business Performance), 리더로서의 종합적인 역량(Competency)을 갖춰야 합니다.

- 평가: 후보자 윤호영은 당행이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3) 본인 소명

후보자 윤호영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임원(사외이사/감사위원이 아닌 임원) 결격 요건 확인서를 본인이 확인 및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기타 전문성 중심의 경험, 경영성과, 역량 등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후보자는 당행의 대표이사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 윤호영에 대하여 대표이사 추천을 위해 2021년 2월 16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행에서 정하는 대표이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역량, 경험, 전문성, 소통 능력, 리더십 등 대표이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윤호영을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단,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관한 것이므로, 후보자 본인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2) 대표집행임원 후보

당행은 2021년도에 대표집행임원 후보를 추천한 내역이 없습니다.

(3)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후보자 오평섭, 윤웅진, 최수열에 대한 '후보자 인적사항'은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후보제안자

후보자 오평섭, 윤웅진, 최수열에 대한 '후보제안자'는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 사외이사 후보, (나) 후보제안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후보자 오평섭, 윤웅진, 최수열에 대한 '후보자 추천 사유'는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 사외이사 후보, (다) 후보자 추천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후보자 오평섭, 윤웅진, 최수열에 대한 '자격충족 여부'는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 사외이사 후보, (마) 자격충족 여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 오평섭, 윤웅진, 최수열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는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 사외이사 후보,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후보자 오평섭]

- 1) 성명 : 오평섭
- 2) 출생연도 : 1960년
- 3) 출신학교 :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 학사, 광주대 부동산금융학 석사, 조선대 경영학 박사
- 4) 경력  
2015~2016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전무

2017~2017 KB국민은행 고객전략그룹 부행장

2018~2018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후보자 윤웅진]**

- 1) 성명 : 윤웅진
- 2) 출생연도 : 1963년
- 3) 출신학교 : USC 회계학 학사/석사,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MBA)
- 4) 경력
  - 2004~2005 그라비티 대표이사
  - 2006~2010 클레리언파트너스 사장
  - 2011~2012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2012~2018 큐브벤처파트너스 파트너
  - 2018~현재 인사이트에쿼티파트너스 파트너
  - 2019~현재 카카오뱅크 사외이사

**[후보자 진웅섭]**

- 1) 성명 : 진웅섭
- 2) 출생연도 : 1959년
- 3) 출신학교 : 건국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사
- 4) 경력
  - 2012~2014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2014~2014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 2014~2017 금융감독원 원장
  - 2020~현재 법무법인 광장 고문

**[후보자 최수열]**

- 1) 성명 : 최수열
- 2) 출생연도 : 1968년

3) 출신학교 :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숭실대 경영학 석사

4) 경력

1992~2019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

2020~현재 삼도회계법인 파트너

#### (나) 후보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카카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후보자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오평섭]

후보자 오평섭은 KB국민은행 개인고객지원그룹 전무, 고객전략그룹 부행장,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을 역임하는 등 은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살려 비대면은행으로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은행 각 부문의 탄탄한 체계 수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당행이 은행업계의 혁신플레이어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뛰어난 역량 외에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타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윤리의식, 책임성, 충실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윤웅진]

후보자 윤웅진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MBA(와튼스쿨) 출신으로 KPMG, 보스턴컨설팅그룹, 클레리언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등 금융투자업계에서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투자 및 경영 전문가입니다. 후보자의 이력과 실무경험 등을 감안할 때 은행 경영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적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투자 및 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고객과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남다른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재임 기간 중 높은 출석률로 적극 참여하는 등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사회 본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책임자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진웅섭]

후보자 진웅섭은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무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의 금융 전문가입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익숙하고 풍부한 식견을 보유한 후보자로 이러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가 마주한 다방면의 이슈와 현안에 다각적인 대안 제시와 운영상의 합리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업무 수행이 기대되며,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타 당행과의 거래관계가 없어 은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고, 은행 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와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최수열]

후보자 최수열은 1990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이후 삼일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삼도회계법인에 재직 중인 회계 전문가입니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자로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관계법령 및 내규를 충족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회계법인에 종사하여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식견을 갖춘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혁신을 견인하는 주체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깊이와 전문성을 높일 후보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당행과의 거래관계가 없어 은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고 은행경영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상기 오평섭, 윤웅진, 진웅섭, 최수열 후보자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발굴 노력을 통해 해당 후보자를 선정하고 오평섭, 윤웅진, 진웅섭 후보자는 2021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수열 후보자는 2021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후보자 오평섭]

-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 윤웅진]

-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 진웅섭]

-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 최수열]

- 1)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2)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평가 : 후보자 오평섭, 윤웅진, 진웅섭, 최수열 이상 4명은 관련법령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카카오뱅크는 정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은행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 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당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 오평섭, 윤웅진, 진웅섭, 최수열 이상 4명은 동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 카카오뱅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를 통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써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 보유 여부를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오평섭, 진웅섭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서, 윤웅진 후보자는 회계 및 경영전문가로서, 최수열 후보자는 회계전문가로서, 각 후보자의 경력과 추천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문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무공정성>

- 카카오뱅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를 통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위 후보자 4명은 당행과 거래관계가 없으며, 현재 당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음에 따라 당행 고객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리성, 책임성>

- 카카오뱅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를 통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위 후보자 4명은 그동안의 이력과 대내외 평판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로서 가져야 할 높은 수준의 윤리적 의식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향후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실성>

- 카카오뱅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를 통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위 후보자 4명은 연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일정과 후보자 본인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본인 소명

후보자 오평섭, 윤웅진, 진웅섭, 최수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임원(사외이사) 결격 요건 확인서를 본인이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기타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 사외이사로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증한 결과 후보자 오평섭, 윤웅진, 진웅섭, 최수열은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카카오뱅크는 오평섭, 윤웅진, 진웅섭, 최수열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2021년 2월 16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2월 24일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행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기 4명의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당행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단 윤웅진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건으로 본인 의결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1년 3월 30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3명이며, 이 중 1명이 연임하였습니다. 내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등 출석률	평가여부
윤웅진	27개월	연임	100%	평가

주) 이사회 등 참석률 기준은 2019년 1월 3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재임 후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소극적 자격요건과 당행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후보자의 제출서류 및 대내외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였습니다.

후보자 윤웅진은 지난 2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뛰어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의식과 책임감을 갖추고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 남다른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중 높은 출석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외이사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은 사외이사 평가결과에서도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카카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 자격요건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수 있으며, 후보군 관리 시 공정함을 기반으로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당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부서인 인사팀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카카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문성과 식견,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12월 8일(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을 점검하였고, 2021년 12월 21일(화) 이사회에 후보군 관리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결의일자 : 2021년 12월 8일(수)

전문분야	인원수	비율
IT	10	18.5%
금융	6	11.1%
경제	3	5.5%
경영	6	11.1%
회계	7	13.0%
법률	8	14.8%
소비자보호	4	7.4%
ESG	5	9.3%
기타(정보보호 등)	5	9.3%
합계	54	100.0%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관련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 2021년 12월 21일(화)

전문분야	인원수	비율
IT	10	18.5%
금융	6	11.1%
경제	3	5.5%
경영	6	11.1%
회계	7	13.0%
법률	8	14.8%
소비자보호	4	7.4%
ESG	5	9.3%
기타(정보보호 등)	5	9.3%
합계	54	100.0%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외이사 지원부서인 인사팀은 2021년 12월 8일(수)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별 전문분야, 주요 경력, 추천 사유 등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연 1회 이상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안건의 내용, 사외이사별 활동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동 보고서의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 가) 사외이사 이계순

사외이사 이계순은 2021년 중 임기 내에 개최된 3회의 이사회와 3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의 보수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계순은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임기가 만료된 2021년 3월까지 총 4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나) 사외이사 이상원

사외이사 이상원은 2021년 중 임기 내에 개최된 3회의 이사회와 5회의 감사위원회, 3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상원은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임기가 만료된 2021년 3월까지 총 62.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다) 사외이사 김진일

사외이사 김진일은 2021년 중 임기 내에 개최된 3회의 이사회와 4회의 감사위원회, 2회의 위험관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진일은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2021년 3월까지 총 5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라) 사외이사 윤웅진

사외이사 윤웅진은 2021년에 개최된 총 16회의 이사회, 총 14회의 감사위원회와 총 5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윤웅진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총 21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 마) 사외이사 진재욱

사외이사 진재욱은 2021년 중 임기 내에 개최된 3회의 이사회와 2회의 위험관리위원회, 1회의 보수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진재욱은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2021년 3월까지 총 37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 신보선**

사외이사 신보선은 2021년에 개최된 총 14회의 이사회와 총 13회의 위험관리위원회, 총 8회의 보수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신보선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총 211.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 사외이사 황인산**

사외이사 황인산은 2021년 개최된 총 14회의 이사회와 총 16번의 감사위원회, 임기중 개최된 2회의 위험관리위원회와 7회의 보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황인산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보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총 23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진웅섭**

사외이사 진웅섭은 2021년 임기내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와 총 2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외이사는 2021년 3월부터 선임사외이사를 맡아 이사회 내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외이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진웅섭은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총 114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사외이사 오평섭**

사외이사 오평섭은 2021년 임기내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와 총 11번의 감사위원회, 총 11회의 위험관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오평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총 205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차) 사외이사 최수열**

사외이사 최수열은 2021년 임기내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와 총 11번의 감사위원회, 총 11회의 위험관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최수열은 카카오뱅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총 202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카) 요약**

사외이사	이사회	위원회					활동시간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이계순 <sup>2)</sup>	3	3	14	- <sup>1)</sup>	-	-	-	-	-	3	3	6	1	1	6	-	-	-	40
이상원 <sup>3)</sup>	3	3	14	5	5	5	-	-	-	3	3	6	-	-	-	-	-	-	62.5
진재욱 <sup>4)</sup>	3	3	14	-	-	-	2	2	4	-	-	-	1	1	6	-	-	-	37
김진일 <sup>5)</sup>	3	3	14	4	4	3	2	2	4	-	-	-	-	-	-	-	-	-	54
윤웅진	14	14	62	16	16	19	-	-	-	5	5	10	-	-	-	-	-	-	213
황인산	14	14	62	16	16	19	2	2	4	-	-	-	8	8	11	-	-	-	235
신보선	14	14	62	-	-	-	13	13	38	-	-	-	7	7	18	-	-	-	211.5
진웅섭 <sup>6)</sup>	11	11	48	-	-	-	-	-	-	2	2	4	-	-	-	-	-	-	114
오평섭 <sup>7)</sup>	11	11	48	11	11	14	11	11	34	-	-	-	-	-	-	-	-	-	205
최수열 <sup>8)</sup>	11	11	48	11	11	14	11	11	34	-	-	-	-	-	-	-	-	-	202

주1) “-”는 비대상을 의미함

주2) 2021.3.30 이계순 사외이사의 퇴임 전까지 임기 내 개최 횟수를 의미함

주3) 2021.3.30 이상원 사외이사의 퇴임 전까지 임기 내 개최 횟수를 의미함

주4) 2021.3.4 진재욱 사외이사의 퇴임 전까지 임기 내 개최 횟수를 의미함

주5) 2021.3.4 김진일 사외이사의 퇴임 전까지 임기 내 개최 횟수를 의미함

주6) 2021.3.30 진웅섭 사외이사의 선임 후 개최 횟수를 의미함

주7) 2021.3.30 오평섭 사외이사의 선임 후 개최 횟수를 의미함

주8) 2021.3.30 최수열 사외이사의 선임 후 개최 횟수를 의미함

####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행은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가입기간	2021.5.24~2022.5.24 (매년 갱신)
피보험자	카카오뱅크 임원
보상한도	총 보상한도 100억원(사고당 최고 100억원) 자기부담금 : 없음 - 사외이사의 자기부담액은 배상책임의 20%(1억원 한도 이내)
보험료	48백만원
보험사고	[보상하는 손해] 1. 경영배상책임 2. 피보험회사의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의도적으로 이익 또는 편의를 불법으로 얻은 사실 2. 의도적으로 부정행위, 사기행위, 법규를 위반한 범죄행위 3.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4. 이전 손해배상청구 내역 및 사고 정황 5. 오염 물질의 배출, 유포, 살포, 누출, 기록 등에 기인되는 손해배상청구 6. 피보험자참여 손해배상청구 7. 대주주 8. 수탁자로서의 배상책임

	9. 전문직업 수행 보장제외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원자력물질로 인한 배상청구 12. 정부기관 배상청구 13. 전쟁/테러행위 14.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회사의 증권의 매도나 매수를 통한 부당이익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 15. 지급불능, 법정관리, 파산 또는 청산 등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16. 기업공개(IPO)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17. 전염병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	--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이상원	이계순	진재욱	김진일	윤웅진	황인산	신보선	진웅섭	오평섭	최수열
<b>1. 교육·연수 실시 내역</b>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1월 14일 15:00~16:00 (1h) 2021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방안 및 연간일정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sup>1)</sup>	-	-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2월 3일 9:30~10:30 (1h) AML리스크 관리와 현황(위험관리)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	-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2월 3일 13:30~14:30 (1h) 2021년 1월 카카오뱅크 주요 현황 공유(전략)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4월 8일 14:30~15:00 (0.5h) 내부감사업무 현황 (감사)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참석	참석	-	-	참석	참석
마.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4월 29일 10:00~11:00 (1h) 2021년 카카오뱅크 다운로드교육세션(전략, 준법) 2021년 4월 29일 13:00~14:00 (1h) 2021년 이사회 준법교육 (법률, 위험관리)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바.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6월 1일 ~ 2021년 6월 30일 (2h, 온라인 교육) 경영진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금융, 법률) 2021년 6월 2일 12:30~13:30 (1h) 2021년 상반기 주요 경영 및 사업현황 공유(전략) 2021년 6월 7일 10:30~11:30 (1h) 2021년 하반기 주요 경영 및 사업계획 공유(전략)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사.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6월 24일 11:30~12:00 (0.5h) 대손충당금 산출방법론 (회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참석	참석	-	-	참석	참석
아.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7월 22일 14:00~17:00 (3h)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감사)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	-	-	-	참석	-
자.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7월 29일 14:00~15:00 (1h) 위험관리위원회운영 안내 및 은행리스크의 이해(위험관리)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	-	참석	-	참석	참석	
차.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7월 29일 15:00~16:00 (1h) 2021년 3분기 주요 경영 및 사업현황 공유 (전략)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카.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10월 14일 15:00~16:00 (1h) 플랫폼 경제와 감사리더십(감사)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참석	참석	-	-	참석	참석	
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10월 28일 15:00~16:00 (1h) 2021년 9월 카카오뱅크 주요 현황 공유(전략)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파.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1년 12월 21일 14:30~16:30 (2h) 자금세탁방지제도 최근 동향 및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금융, 법률) 2021년 12월 28일 13:00~15:00 (2h) 2021년 하반기 주요 경영 및 사업현황 공유(전략)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	-	-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b>2. 누적 교육 시간</b>	<b>2</b>	<b>2</b>	<b>3</b>	<b>3</b>	<b>16</b>	<b>17</b>	<b>16</b>	<b>12</b>	<b>18</b>	<b>15</b>	

주1) “-“는 비대상을 의미함

##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1) 사외이사 이계순

####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 나) 적극적 자격요건

이계순 사외이사는 우체국금융개발원, 서울체신청,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등 오랜 기간 수신 금융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경영 및 금융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2) 사외이사 이상원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이상원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과 함께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3) 사외이사 진재욱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진재욱 사외이사는 증권업 및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투자 및 금융 분야에 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4) 사외이사 김진일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진일 사외이사는 현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과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금융통화정책기관 및 학계에서 근무함으로써 국내외 금융 및 통화정책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5) 사외이사 윤웅진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윤웅진 사외이사는 벤처 및 사모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업계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투자 및 금융 분야에 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6) 사외이사 황인산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황인산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과 함께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7) 사외이사 신보선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신보선 사외이사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실무경험으로 금융, 경제 분야 전문가로

인정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 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8) 사외이사 진웅섭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진웅섭 사외이사는 경제부처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서 오랜 실무 경험과 함께 금융업에 있어 중요한 법률, 제도환경과 그 전반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9) 사외이사 오평섭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오평섭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과 함께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10) 사외이사 최수열

가) 소극적 자격요건

상법 제382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최수열 사외이사는 회계법인 등에서 오랜 실무 경험과 함께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업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에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충분한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나. 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보유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바. 사외이사 평가

### (1) 평가개요

카카오뱅크는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으로 정하며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연임 시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정관 제38조). 사외이사의 경우 당행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습니다(정관 제38조 제5항).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 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에 의한 내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2) 내부평가

#### 가) 내부평가 개요

**평가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자기평가, 상호평가, 지원부서 평가의 3가지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의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 별로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의 영역에 대해 5등급의 절대평가로, 지원부서평가는 참여도 기여도 영역에 대해 5등급의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양호 미흡의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평가절차**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는 사외이사 전원(6명)에 의한 설문평가로 이루어지며 지원부서평가는 이사회 지원부서(전략팀)에서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현황, 의견 개진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활동 참여도와, 경영 조언 및 지원 노력 등 기여도에 대해 5등급의 절대평가로 실시합니다. 이때 각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양호 미흡의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1) 총론

2021년도 사외이사에 대해 이사회 주도로 재임기간 1년 활동에 대한 평가를 2022년 2월에 실시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자기평가, 상호평가, 지원부서평가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6명의 사외이사 모두 평가 구분인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의 전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정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감안할 때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윤웅진

- 카카오뱅크는 각 사외이사에 대하여 자기, 상호평가에서는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의 5가지 부문으로, 지원부서평가에서는 「참여도」, 「기여도」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 · 상호평가					지원부서평가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참여도	기여도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 2021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윤웅진 사외이사는 위 부문에서 각각 최고 수준을 득점하였습니다.
- 벤처캐피털 및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업계에서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투자 전문가로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및 경쟁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동향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미래지향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장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황인산

- 카카오뱅크는 각 사외이사에 대하여 자기, 상호평가에서는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의 5가지 부문으로, 지원부서평가에서는 「참여도」, 「기여도」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 · 상호평가					지원부서평가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참여도	기여도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 2021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황인산 사외이사는 위 부문에서 각각 최고 수준을 득점하였습니다.
- 은행업권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금융 산업 전문가로서 카카오뱅크와 은행산업 전반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안건 검토를 비롯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지식과 유의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보수위원장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신보선

- 카카오뱅크는 각 사외이사에 대하여 자기, 상호평가에서는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의 5가지 부문으로, 지원부서평가에서는 「참여도」, 「기여도」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 · 상호평가					지원부서평가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참여도	기여도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 2021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신보선 사외이사는 위 부문에서 각각 최고 수준을 득점하였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쌓은 오랜 기간 동안의 경력으로 금융, 경제분야 전문가로 인정되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적 조언 활동에 주력해 주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사외이사 진웅섭

- 카카오뱅크는 각 사외이사에 대하여 자기, 상호평가에서는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의 5가지 부문으로, 지원부서평가에서는 「참여도」, 「기여도」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 · 상호평가					지원부서평가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참여도	기여도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 2021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진웅섭 사외이사는 위 부문에서 각각 최고 수준을 득점하였습니다.
- 오랜 경력을 쌓은 법률, 금융 산업 전문가로서 카카오뱅크가 마주한 다양한 이슈와 제도적인 환경에 대해 합리적인 조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안건 검토를 비롯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식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사외이사 오평섭

- 카카오뱅크는 각 사외이사에 대하여 자기, 상호평가에서는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의 5가지 부문으로, 지원부서평가에서는 「참여도」, 「기여도」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 · 상호평가					지원부서평가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참여도	기여도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 2021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오평섭 사외이사는 위 부문에서 각각 최고 수준을 득점하였습니다.
- 은행업권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금융 산업 전문가로서 카카오뱅크와 은행산업 전반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안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영 전반에 있어서 당행의 성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최수열**

- 카카오뱅크는 각 사외이사에 대하여 자기, 상호평가에서는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의 5가지 부문으로, 지원부서평가에서는 「참여도」, 「기여도」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 · 상호평가					지원부서평가	
기본역할평가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독립성	참여도	기여도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 2021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황인산 사외이사는 위 부문에서 각각 최고 수준을 득점하였습니다.
- 오랜 경력을 쌓은 회계 전문가로서 관계법령 및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안건 검토와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경영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 외부평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카카오뱅크는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는 향후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진웅섭 선임사외이사는 2021년 임기 중 개최된 총 11회의 이사회, 총 2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카카오뱅크는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간사 및 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업무는 전략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현재 전략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수는 총 3명입니다.

카카오뱅크 전략팀은 2021년 연차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총 14회의 이사회 개최를 추진하며 5회의 운영위원회, 16회의 감사위원회, 13회의 위험관리위원회, 8회의 보수위원회, 5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은행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수시로 사외이사들에게 은행의 경영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내용을 기록, 유지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지시사항 처리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이상원**

가) 재직기간 : 2016.12.23~2021.3.30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22.2	
	기본급	11.9	
	상여금	-	
	기타 수당	3.5	회의수당 50만원/회 x 7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0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5.8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주1) 회의수당은 동일자에 여러 회의(소위원회 및 이사회)를 참석하는 경우 1회만 지급함.(이하 동일)

2) 사외이사 김진일

가) 재직기간 : 2019.1.3~2021.3.4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4.2	
	기본급	8.5	
	상여금	-	
	기타 수당	2.5	회의수당 50만원/회 x 5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3.2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3) 사외이사 진재욱

가) 재직기간 : 2019.1.3~2021.3.4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	----	------

가. 보수총액		13.6	
	기본금	8.5	
	상여금	-	
	기타 수당	2.0	회의수당 50만원/회 x 4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3.1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 4) 사외이사 이계순

가) 재직기간 : 2019.1.3~2021.3.30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18.8	
	기본금	11.8	
	상여금	-	
	기타 수당	3.0	회의수당 50만원/회 x 6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0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3.0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 5) 사외이사 윤웅진

가) 재직기간 : 2019.1.3~2021.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4.3	
	기본금	48.0	
	상여금	-	
	기타 수당	11.5	회의수당 50만원/회 x 23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0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3.8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6) 사외이사 황인산

가) 재직기간 : 2020.3.30~2021.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4.8	
	기본금	48.0	
	상여금	-	
	기타 수당	11.5	회의수당 50만원/회 x 23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2.0	종합검진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3.3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7) 사외이사 신보선

가) 재직기간 : 2020.3.30~2021.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3.4	
	기본금	48.0	
	상여금	-	
	기타 수당	10.0	회의수당 50만원/회 x 20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0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4.4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8) 사외이사 오평섭

가) 재직기간 : 2021.3.30~2021.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9.4	
	기본금	36.3	
	상여금	-	
	기타 수당	8.5	회의수당 50만원/회 x 17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0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3.6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9) 사외이사 진웅섭

가) 재직기간 : 2021.3.30~2021.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5.6	
	기본금	36.2	
	상여금	-	
	기타 수당	5	회의수당 50만원/회 x 10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4.4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10) 사외이사 최수열

가) 재직기간 : 2021.3.30~2021.12.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0.4	
	기본급	36.3	
	상여금	-	
	기타 수당	8.5	회의수당 50만원/회 x 17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건강검진 지원	1.0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	회의참석 시 왕복 교통편 제공
	사무실제공	-	
	기타 편익제공	4.6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김만수	'16.12.23	'18.12.22	24개월	위험관리위 (’17.1~’18.1) 감사위 (’17.1~’18.12) 보수위 (’18.1~’18.12)	선임사외이사 (’17.1~’18.12)	키투웨이 회장 삼성KPMG 파트너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김호	'16.12.23	'18.12.22	24개월	임추위 (’17.1~’18.12) 보수위 (’17.1~’18.12)	보수위원장 (’17.1~’18.12)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상근부회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우정사업본부 경북채신청장, 금융사업단장
윤영규	'16.12.23	'18.12.22	24개월	보수위 (’17.1~’18.1) 감사위 (’17.1~’18.12) 위험관리위 (’18.1~’18.12) 임추위 (’18.10~’18.12)	임추위원장 (’18.10~’18.12)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민주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홍준기	'16.12.23	'18.10.5	21개월	임추위 (’17.1~’18.10) 보수위 (’17.1~’18.10)	임추위원장 (’17.1~’18.10)	UBS증권 한국지점 대표 UBS은행 한국지점 대표 Nomura Int'l 아시아 자본시장 본부장
노재균	'16.12.23	'20.1.2	39개월	임추위	위험관리위원장	서울보증보험 전무

				(’17.1~’18.12) 위험관리위 (’17.1~’20.3) 보수위 (’18.10~’20.3) 운영위 (’19.11~’20.3)	(’17.1~’18.12) 보수위원장 (’19.1~’20.3) 운영위원장 (’19.12~’20.3)	서울보증보험 상무 서울보증보험 본부장
이상원	’16.12.23	’21.3.29	51개월	위험관리위 (’17.1~’18.12) 감사위 (’17.1~’21.3) 임추위 (’19.1~’21.3)	감사위원장 (’17.1~’21.3)	국민은행 WM 부행장 국민은행 신사업 부행장 국민은행 PB사업부장, 글로벌사업부장
이계순	’18.12.21	’21.1.2	27개월	보수위 (’19.1~’21.3) 임추위 (’19.1~’21.3) 운영위 (’20.1~’20.3)	선임사외이사 (’19.1~’21.3)	우체국금융개발원장 지식경제부 서울채신청장
김진일	’18.12.21	’21.1.2	26개월	위험관리위 (’19.1~’21.3) 감사위 (’19.1~’21.3)	위험관리위원장 (’19.1~’21.3)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코노미스트
윤웅진	’18.12.21	’22.3.29	36개월	임추위 (’19.1~ 현재) 감사위 (’19.1~ 현재)	임추위원장 (’19.1~ 현재)	인사이트에퀴티파트너스 사장 큐브벤처파트너스 사장
진재욱	’18.12.21	’21.1.2	26개월	위험관리위 (’19.1~’21.3) 보수위 (’19.1~’21.3)	보수위원장 (’20.4~’21.3)	UBS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하나유비에스 자산운용 대표이사
신보선	’20.3.30	’22.3.29	21개월	위험관리위 (’20.3~ 현재) 보수위 (’20.3~ 현재)	위험관리위원장 (’21.3~ 현재)	서울보증보험 전무 서울보증보험 상무
황인산	’20.3.30	’22.3.29	21개월	위험관리위 (’20.3~’21.3) 감사위 (’20.3~ 현재) 보수위 (’21.3~ 현재)	보수위원장 (’21.3~ 현재)	딜라이브 사내이사(감사) 하나은행 부행장
진웅섭	’21.3.30	’23.3.29	9개월	임추위 (’21.3~ 현재)	선임사외이사 (’21.3~ 현재)	법무법인 광장 고문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오평섭	’21.3.30	’23.3.29	9개월	위험관리위 (’21.3~ 현재) 감사위 (’21.3~ 현재)	감사위원장 (’21.3~ 현재)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KB국민은행 고객전략그룹 부행장
최수열	’21.3.30	’23.3.29	9개월	위험관리위 (’21.3~ 현재) 감사위 (’21.3~ 현재)		삼도회계법인 파트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주1) 2016년 12월 23일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 22일 만료되나 2018년 12월 21일 임시주주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가 2019년 1월 3일 개시되는 바, 신규 사외이사의 임기개시일까지 기존 사외이사들이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유지함

주2) 2018년 12월 21일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2019년 1월 3일 개시되었으며, 당행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가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됨

주3) 홍준기 사외이사는 2018년 10월 5일, 김진일, 진재욱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4일 각각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카카오뱅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하여 2018년 제8차 이사회(2018년 10월 6일)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대표이사 자격요건, 경영승계 개시 사유 및 절차, 비상시 경영승계 절차, 후보자 선발 및 자격 검증 등 경영 승계에 관한 전반입니다. 당행 이사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라 당행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 연 1회 이상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 대표이사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본 연차보고서에 첨부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 1) 일반

카카오뱅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당행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당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가 선임 되어야 하며,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필요시 대표이사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전문성 중심의 경험(Experience), 탁월하고 일관성 있는 성과(Business Performance), 리더로서의 종합적인 역량(Competency)을 대표이사의 추가적인 필요 자격요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 절차 개시 사유는 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유고 등으로 하며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 개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내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자질 및 역량과 함께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카카오뱅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행은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개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후보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이외에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당행의 지배구조내부규범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비상계획

당행의 대표이사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빠른 시일 이내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당행 운영 및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유고 등 상황에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서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부대표, 경영전략팀장, 매니지먼트팀장, 비즈니스팀장, 서비스팀장, 정보보호팀장, 기술팀장, 커뮤니케이션팀장, 리스크팀장, 컴플라이언스팀장(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팀장, IA팀장(내부감사책임자), 플랫폼가속화팀장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 최고경영자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 자격요건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6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5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당행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당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과 IT가 결합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 중심의 경험(Experience), 탁월하고 일관성 있는 성과창출(Business Performance), 잠재력,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 이해 등 리더로서의 종합적인 역량(Competency)을 추가적인 자격요건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 평가

윤호영 대표이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카카오뱅크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후 유례없는 성장과 빠른 흑자 달성을 견인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로 단기간에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과 IT의 융합전문가로서 국내 모바일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금융소비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데 앞장서는 등 카카오뱅크가

혁신의 대명사로 금융 산업을 선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볼 때 최고경영자로서 눈에 띄는 경영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나아가 윤호영 대표이사는 날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상장기업으로서 카카오뱅크의 차별화된 혁신 역량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그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물로 판단되는 등 최고경영자가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카카오뱅크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이사 선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탐색하며, 이사회를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을 점검하여 그 적정성을 적극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 대표이사 윤호영의 임기가 2020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인 2021년 3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당행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난 2020년 11월 24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대상자를 1차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질 및 역량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심층 검증하였으며, 2021년 2월 16일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 의결 경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0년 11월 24일	대표이사 후보군 검토	2020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0년 12월 18일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2020년 제14차 이사회
2021년 2월 16일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2021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3월 3일	사내이사,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 부의	2021년 제3차 이사회
2021년 3월 30일	사내이사, 대표이사 선임	2021년 정기주주총회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카카오뱅크는 승계 과정의 경영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체계 유지를 위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육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

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침에 따라 후보군 자격요건 부여, 후보군 탐색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 검증,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카카오뱅크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및 당행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2021년 말 현재 총 23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 지원업무 전반은 인사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이 관련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자를 최종 추천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당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받아 후보군 추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후보군 현황

결의일자: 2021년 12월 21일(화) 제13차 이사회

구 분		후보군수	백분율	기 타
내 부		13	56.6%	
외 부	금융회사	5	21.7%	
	비금융회사	5	21.7%	
	공공기관	-	-	
	기타	-	-	
합 계		23	100.0%	

###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내역

카카오뱅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3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4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4조에 따라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8일에 개최된 2021년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동 내용은 2021년 12월 21일에 개최된 2021년 제13차 이사회에서 최종 검토 및 결의하였습니다.

###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카카오뱅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지원 업무는 당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5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사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은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 업무 지원, 그 밖에 대표이사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승계업무 관련 지원 내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

고 있습니다.

## 6. 감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카카오뱅크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은행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및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업무수행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고, 경영진이 경영활동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감독기관 및 내부감사부서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조치내역을 확인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한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는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 타 위원회 및 경영진과의 역할분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차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실시한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내부감사책임자가 그 주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및 제15조, 감사규정 제3조 및 제7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경영진 등의 주요 업무집행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검토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경영진 또는 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여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나) 외부감사인 선정 및 감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관 제51조).

카카오뱅크는 2020년 9월 23일 당행 이사회에서 기업공개(IPO) 추진을 결의함에 따라(2020년 제 11차 이사회, 2020.9.23)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 요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0년 제10차 감사위원회, 2020.9.23 및 2020년 제12차 감사위원회, 2020.11.24),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로부터 제5기(2020년) 및 제6기(2021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차기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각 제안사에 대한 대면평가를 실시 후 평가결과에 따라 2022(제7기) ~ 2024(제9기)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2021년도 제13차 감사위원회, 2021.11.11)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선임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제출 받고, 이를 근거로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합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3조).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202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회계이슈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21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2021.3.3)에 보고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기 보고내용을 심의한 후 2020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적정성에 대해 독립성, 감사품질, 감사위원회 보고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 이외의 비감사 서비스 계약은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체결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한 비감사 서비스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가 2021년 수행한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관련 주요 검토·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내 용	회차	일자
1	독립된 감사인의 2020년(제5기) 회계연도 감사계획 심의	2021년 제1차	21.1.14
2	2020년(제5기)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2021년 제3차	21.3.3
3	2020년(제5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2021년 제5차	21.3.26
4	독립된 감사인의 2021년(제6기) 감사계획 보고 및 1분기 검토계획 보고	2021년 제7차	21.4.8
5	독립된 감사인의 2021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2021년 제8차	21.5.6
6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감사위원회 교육	2021년 제9차	21.6.24
7	2021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 결과 보고	2021년 제10차	21.8.12
8	(주)카카오뱅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안)	2021년 제11차	21.8.30
9	2022년(제7기)~2024년(제9기) 사업연도 (주)카카오뱅크 외부감사인 선정	2021년 제13차	21.11.11
10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법인 제안설명회 및 감사위원회 평가	2021년 제13차	21.11.11
11	독립된 감사인의 2021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2021년 제13차	21.11.11
12	2022년(제7기)~2024년(제9기)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 보고	2021년 제15차	21.12.21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카카오뱅크는 정관상 별도로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외규 및 정관에 따라 이사로부터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447조의3, 447조의4, 정관 제54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1년도 제2차 이사회(2021.2.3)에서 승인 받은 2020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이사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였으며, 보조기구로 설치된 내부 감사조직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에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감사결과 등을 보고받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2021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2021.3.3).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의견〉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의 2020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기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기말감사 과정에서 주요 이슈사항은 동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음”

감사위원회가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으며, 영업보고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은행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그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 및 제17조)

감사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감사위원회(2021.2.3)에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총 403개 항목의 핵심통제에 대한 설계 및 운영평가 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조직을 통하여 경영진이 실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절차와 운영실태 평

가결과의 적정성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당행의 2020년(제5기)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2021년 제3차 감사위원회, 2021.3.3), 이러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2021년 제3차 이사회, 2021.3.3).

## 바)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결과 보고

감사위원회는 매년도 초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감사조직으로 하여금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수행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 및 제17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1년 제1차 감사위원회(2021.1.14)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결의하였고, 내부 감사조직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2021년 제1차 감사위원회, 2021.1.14, 2021년 제12차 감사위원회, 2021.10.21, 2021년 제14차 감사위원회, 2021.12.9), 2021년 제13차 이사회(2021.12.21)에 연간 감사 수행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사) 기타

감사위원회는 은행의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소관의 내부통제기준을 심의하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은행의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평가를 보고 받습니다. 또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의 활동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2020년 내부통제체계·운영 실태점검 결과 및 준법감시인 연간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였으며 2021년 연간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받아 검토하였습니다(2021년 제1차 감사위원회, 2021.1.14).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 점검과는 별도로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 및 제17조) 내부감사부서에서는 「COSO 내부통제 5요소」 평가와 「감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행의 2020년도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를 3등급(보통)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였습니다(2021년 제9차 감사위원회, 2021.6.24). 또 이러한 평가결과를 2021년도 제8차 이사회(2021.6.24)에 보고하였습니다.

##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19조, 정관 제50조).

감사위원회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합니다(지배구조법 제17조, 제19조, 정관 제50조).

2021년말 현재 카카오뱅크는 감사위원회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회계 및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과 선임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sup>1)</sup>
오평섭	사외	위원장	2021.3.30	2023.3.29
김진일	사외	위원	2019.1.3	2021.1.2 <sup>2)</sup>
황인산	사외	위원	2020.3.30	2022.3.29
이상원	사외	위원	2020.3.30	2021.3.29
윤웅진	사외	위원	2021.3.30	2022.3.29
최수열	사외	위원	2021.3.30	2023.3.29

주1) 위원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됨

주2) 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주종까지 연장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시에 연장되므로 김진일 이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2021년 3월 4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카카오뱅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16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결의하였으며,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1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총 5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21년 제1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 9:30~12:3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월 11일

구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이상원	윤웅진	김진일	황인산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2020년 감사업무 수행 결과 보고	- 특이의견 없음				
4. 결의내용					
가. 2021년 감사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내용					
가. 독립된 감사인의 2020년(제5기) 회계연도 감사계획 보고	- 심의의견 없음				
나. '20년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및 준법감시인 연간 활동 결과 보고	- 심의의견 없음				
다. 내부통제 고도화 프로젝트 종결 보고	- 심의의견 없음				
라. '21년 준법감시인 연간 활동 계획 보고	- 심의의견 없음				

• 2021년 제2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2월 3일 (수) 10:30~11: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월 29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이상원	윤웅진	김진일	황인산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내용					
가. '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심의의견 없음					

• 2021년 제3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3월 3일 (수) 11:00~12: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2월 26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이상원	윤웅진	김진일	황인산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결의내용					
가. 2020년(제5기) 감사보고서 확정 및 제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심의내용					
가.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개정안					
- 심의의견 없음					
나. 2020년(제5기)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심의의견 없음					
다. 2020년(제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심의의견 없음					

• 2021년 제4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3월 3일 (수) 15:30~16: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2월 26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이상원	윤웅진	김진일	황인산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결의내용					
가. 주주총회 안건 및 서류에 대한 진술 결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5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3월 26일 (금) 16:00~17: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3월 23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이상원	윤웅진	황인산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결의내용				
가. 감사조직 개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업보고서 내 감사관련 자료(의견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심의내용				
가. 「감사위원회 규정」개정안	- 심의의견 없음			
나. 2020년(제5기)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심의의견 없음			

• 2021년 제6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3월 30일 (화) 13:15~13:45
- 안건 통지일 : 2021년 3월 26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결의내용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7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4월 8일 (목) 14:00~15: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4월 6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내부감사업무 현황(감사위원회 교육)	- 특이의견 없음				
4. 심의내용					
가. 독립된 감사인의 2021년(제6기) 감사계획 보고 및 1분기 검토계획 보고	- 심의의견 없음				

• 2021년 제8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5월 6일 (목) 10:30~12: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5월 3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b>3. 보고안건</b>					
가. 감사관련 지침 개정		- 특이의견 없음			
<b>4. 결의내용</b>					
가. 「감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b>5. 심의내용</b>					
가. 독립된 감사인의 2021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 심의의견 없음			
나.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평가 계획		- 심의의견 없음			

• 2021년 제9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 10:30~12: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6월 16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b>1. 성명</b>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b>2. 참석여부</b>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b>3. 보고안건</b>					
가. 대외검사 관련 보고		- 특이의견 없음			
나. 「감사업무지침」 개정 보고		- 특이의견 없음			
다.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감사위원회 교육		- 특이의견 없음			
<b>4. 결의내용</b>					
가. 2021년 내부감사책임자 성과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1년 하반기 감사계획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b>5. 심의내용</b>					
가. 「내부통제기준」 개정(안)		- 심의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보고		- 심의의견 없음			

• 2021년 제10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8월 12일 (목) 11:00~12: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8월 5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b>1. 성명</b>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b>2. 참석여부</b>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b>3. 보고안건</b>					
가. 2020년 금융감독원 리스크실태평가 현 지조치 정리현황 보고		- 특이의견 없음			
<b>4. 심의내용</b>					
가. 2021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 결과 보고		- 심의의견 없음			

• 2021년 제11차 감사위원회

# kakaobank 2021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개최일시 : 2021년 8월 30일 (월) 11:00~12: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8월 23일

구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결의내용					
가. (주)카카오뱅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 준(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2021년 제12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6:00~18: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0월 14일

구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감사 결과 등 보고	- 특이의견 없음				
4. 심의내용					
가.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수행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보고	- 심의의견 없음				

## • 2021년 제13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 11:20~16: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1월 4일

구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대외감사 관련 보고	- 특이의견 없음				
4. 결의내용					
가. 2022년(제7기)~2024년(제9기) 사업연 도 (주)카카오뱅크 외부감사인 선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팀장 임면에 대한 동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1년 하반기 감사계획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내용					
가. 「내부통제기준」 개정(안)	- 심의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보고	- 심의의견 없음				

## • 2021년 제14차 감사위원회

# kakaobank 2021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개최일시 : 2021년 12월 9일 (목) 16:00~17: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2월 2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2021년 기술팀 FGI(Focus Group Interview)수행 결과보고	- 특이의견 없음				
4. 심의내용					
가. 내부감사 결과 보고	- 심의의견 없음				

## • 2021년 제15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2월 21일 (화) 10:30~11:1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2월 14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가. 2022년(제7기)~2024년(제9기)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 보고	- 특이의견 없음				
4. 결의내용					
가. 감사팀장 임면에 대한 동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조직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5. 심의내용					
가. 2022년 준법감시인 연간 활동 계획 보고	- 심의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 고도화프로젝트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심의의견 없음				
다. 대외검사 관련 보고	- 심의의견 없음				

## • 2021년 제16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2월 28일 (화) 11:30~12: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2월 21일

구 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성명	오평섭	윤웅진	황인산	최수열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4. 결의내용					
가. 2021년 내부감사책임자 성과평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3) 평가

감사위원회 평가의 목적은 당행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당행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위 목적을 위해 이사회가 매년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설문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며, 점검항목에는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이사회 보고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며 평가결과는 주주총회에 보고되어 당해년도 이사회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 라. 감사보조조직 등

카카오뱅크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보조기구로 IA(Internal Audit)팀을 두고 있습니다. IA팀은 2021년말 기준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책임자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경영진의 일상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 IA팀이 수행한 주요 업무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대상	주요업무 및 지원내용
2021. 1. 14.	감사위원회	2021년 감사계획 수립
2021. 1. 14.	감사위원회	2020년 감사업무 수행 결과 보고
2021. 3. 3.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안건 및 서류에 대한 조사업무 지원
2021. 3. 26.	감사위원회	사업보고서 내 감사관련 자료(의견서) 제출
2021. 3. 26.	감사위원회	감사조직 소관 내규의 개정
2021. 3. 26.	감사위원회	2020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2021. 3. 30.	감사위원회	감사조직 소관 내규의 개정
2021. 3. 30.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지원
2021. 4. 8.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교육 지원
2021. 5. 6.	감사위원회	감사조직 소관 내규의 개정
2021. 6. 24.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을 통한 감사위원회 교육 지원
2021. 6. 24.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보고
2021. 6. 24.	감사위원회	감사조직 소관 내규의 개정
2021. 6. 24.	감사위원회	대외검사 관련 보고
2021. 8. 30.	감사위원회	2022년(제7기)~2024년(제9기) 사업연도 (주)카카오뱅크 외부감사인 선정 지원 업무
2021. 10. 21.	감사위원회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수행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보고
2021. 10. 21.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결과 등 보고
2021. 11. 11.	감사위원회	2022년(제7기)~2024년(제9기) 사업연도 (주)카카오뱅크 외부감사인 선정 지원 업무
2021. 11. 11.	감사위원회	대외검사 관련 보고
2021. 12. 9.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결과 보고

일자	대상	주요업무 및 지원내용
2021. 12. 9.	감사위원회	기술팀 FGI 수행 결과보고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또는 내부감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외부전문인력을 계약직 감사역으로 채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제7조, 감사규정 제9조).

## 7. 위험관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카카오뱅크 위험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등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적절한 수행을 감독합니다. 당사의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영업활동은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당사의 수익 창출능력과 자기자본을 감안하여 전행적으로 또는 필요시 조직별로 리스크 허용한도 및 적정투자한도, 손실허용한도 등 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체계는 경영진이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리스크관리 조직과 보고체계는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성 및 견제와 균형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리스크 측정 및 보고는 통일된 지표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특정부문에의 과도한 리스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한다.
- 리스크관리 정책, 절차는 리스크관리 실무조직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부담하는 모든 사업조직에 의해 이행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은행이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영업환경 변화, 발생가능한 위기상황 및 리스크 감내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의 일정범위 내에서 내부자본한도를 설정하고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지침으로 「내부자본 및 한도 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자본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내부자본한도를 ‘은행 통합한도’와 ‘리스크 유형별 총한도’로 구분하여 설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영상 노출되는 다양한 중요 리스크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량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신용, 시장, 운영, 금리리스크를 내부자본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한도 관리 중이며, 전략 및 평판리스크와 같이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의 경우 가용자본에서 내부자본한도로 배분하지 않고 유보한 예비자본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동성리스크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유동성규제비율에 대하여 내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내부자본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한도를 배분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제9차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내부자본 및 한도관리 지침을 개정하였고, 2021년 제13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부자본한도 설정과 리스크 유형별 한도 배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제13차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보고서'와 위험관리비상계획을 포함한 '통합위험상황분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등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위험관리협의회 사전심의를 거쳐 결의하고 부문별 리스크 관리 현황과 부담 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관리 결과 등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이사회는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의사항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기준」은 리스크관리 목표 및 기본방침,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절차 준수 관련 사항, 리스크관리 조직, 리스크관리체계 및 절차,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시 대응절차, 위험관리정보시스템,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리스크 유형별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마) 기타

상기 내용 외에도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는 보조 회의체로서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협의회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의 수립, 위험관리업무 집행의 적정성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 (1) 총괄

카카오뱅크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현재 위원장 포함 4명(사외이사 3명, 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사회가 선임한 사외이사 1인이 담당하고,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은행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

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회계나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sup>1)</sup>
김진일	사외	위원	2019.1.3.	2021.1.2. <sup>2)</sup>
진재욱	사외	위원	2019.1.3.	2021.1.2. <sup>2)</sup>
황인산	사외	위원	2020.3.30.	2021.3.30. <sup>3)</sup>
신보선	사외	위원장	2020.3.30.	2022.3.29.
김광옥	상임	위원	2020.3.30.	2022.3.29.
최수열	사외	위원	2021.3.30.	2023.3.29.
오평섭	사외	위원	2021.3.30.	2023.3.29.

- 주1)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됨
- 주2) 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주총까지 연장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시에 연장되므로 김진일, 진재욱 이사의 임기는 2021.3.30까지 연장되었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2021.3.4. 사임
- 주3) 일신상의 사유로 2021.3.30.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사임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따라 매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중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13회 개최되었고, 해당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60건으로 결의 안건 38건, 심의 안건 1건, 보고 안건은 21건입니다. 위원의 평균참석률은 98%로 운영되었으며,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내역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 2021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 09:00~09:3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월 7일

구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진일	신보선	진재욱	황인산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영업연속성계획(BCP)모의 훈련 결과보고	특이 의견 없음					
나. 부문별 리스크 관리현황/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심의)안건						
가. 「위험관리협의회규정」 개정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급여소득자모형 적용기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심의] 「위험관리기준」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1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3월 3일 (수) 09:00 ~ 09:50
-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절차 및 안건 배부 생략

구분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김진일	신보선	진재욱	황인산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금융감독원 주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	특이 의견 없음					
나. 부문별 리스크 관리현황/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중신용대출(민간중금리) PD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3월 30일 (화) 14:00~14:30
-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절차 및 안건 배부 생략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4월 29일 (목) 15:00~16: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4월 2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부문별 리스크 관리현황/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 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협의회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신청평점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 크측정요소(PD) 사용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6월 24일 (목) 09:00~10: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6월 1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욱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자본 적정성 자체평가 등에 대한 2020년 적합성검증 결과보고	특이 의견 없음				
나. 중저신용대출 취급규모 확대 및 건전성 관리 방안	특이 의견 없음				
다. 부문별 리스크 관리현황/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 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년 상반기 통합위험상황 분석결과 및 위험관리비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미래경기전망(forward looking)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햇살론15 출시에 따른 신용리스 크 산출 방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중신용대출 PD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리스크측정요소 (lifetime PD) 2021년 사용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6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 14:00~15: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7월 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신상품 출시에 따른 리스크 측정 요소 및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사용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 2021년 제7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7월 29일 (목) 13:30~14: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7월 22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0년 금융감독원 리스크실태 평가 정리현황 보고	특이 의견 없음				
나. 2020년 리스크관리실태 점검(내부감사) 결과 보고	특이 의견 없음				
다.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년 유동성리스크관리전략 및 비상조달계획 수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개인사업자 CB출자에 따른 신용 리스크 산출 방안(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8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9월 27일 (월) 10:00~11: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9월 1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b>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b>					
가. 부문별 리스크 관리현황/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 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b>4. 의결안건</b>					
가. 신청평점 신용평가모형(전략모 형) 사용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9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0월 28일 (목) 14:00~15: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0월 21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b>1. 위원 성명</b>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b>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b>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b>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b>					
가. 금융채 발행에 따른 부문별 리스 크 검토	특이 의견 없음				
나. 전략·평판리스크 관리활동 모니 터링 결과 보고	특이 의견 없음				
다. 부문별 리스크관리현황/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 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b>4. 의결안건</b>					
가. 2022년 리스크성향 설정 및 운 영방향(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자본 및 한도관리 지침 개정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10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 10:00~11: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1월 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b>1. 위원 성명</b>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b>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b>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b>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b>					
가. 부문별 리스크 관리현황/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리스크측정요소 모니터링 결과 및 사용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1년 제 11 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2월 2일 (목) 10:00~11:00
- 안건 통지일 : 2021년 11월 25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부문별 리스크 관리현황/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 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주택담보대출 출시에 따른 리스크측정요소 및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사용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리스크측정요소(Lifetime PD) 모니터링 결과 및 사용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미래경기전망(Forward Looking)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12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2월 21일 (화) 09:00~10:20
-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절차 및 안건 배부 생략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관리위원회 위임사항 이행 점검 보고	특이 의견 없음				
나. 부문별 리스크 관리현황/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 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통합위험상황 분석결과 및 위험 관리비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1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서(안)(21년 9월말 기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2년 내부자본한도 설정 및 배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2년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2년 금리리스크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자산건전성분류업무관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미수금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개선(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주택담보대출 출시에 따른 리스크측정요소 사용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2022년 목표 BIS비율 설정 및 자본관리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13차 위험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년 12월 30일 (목) 10:00~10:30
-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거 위험관리위원회 소집 절차 및 안건 배부 생략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신보선	오평섭	최수열	김광옥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보고 및 사전심의 내역	특이 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년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통합위험상황 분석결과 및 위험 관리비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1년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보고서(안) (21년 9월말 기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2년 내부자본한도 설정 및 배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2년 금리리스크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2년 목표 BIS비율 설정 및 자본관리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위험관리위원회 평가의 목적은 당행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위험관리위원회가 당행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위 목적을 위해 이사회가 매년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설문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며, 점검항목에는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이사회 보고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며 평가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되어 당해년도 이사회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8. 운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카카오뱅크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의사결정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이사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면서 오히려 운영상 효율성을 저해하는 점들이 발생하여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폐지되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결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폐지되었습니다.

나. 구성(운영위원회위원)

(1) 총괄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였으나,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폐지되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sup>1)</sup>
김주원	비상임	위원	2020. 3. 30	2021. 3. 30

윤호영	상임	위원장	2020. 3. 30	2021. 3. 30
김광옥	상임	위원	2020. 3. 30	2021. 3. 30

주1) 운영위원회는 2021년 3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폐지

##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카카오뱅크 운영위원회는 2021년 중 총5회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10건에 대해 결의하고, 16건에 대해 사전 심의하였으나,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폐지되었습니다.

### (2) 회의 개최내역

- 2021년 제1차 운영위원회

- 개최일시: 2021년 1월 7일 (목) 18:45
- 안건 통지일: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윤호영	김광옥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안건				
가. 1호안건 체크카드 단기상품혜택의 운영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특이의견없음			
5. 의결안건				
가. 1호안건 고객센터 업무대행 계약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고객센터 업무대행 신규계약 (제니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3호안건 고객센터 업무대행 계약 (호성ITX)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4호안건 고객센터 업무대행 계약 (메타넷애플랫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2차 운영위원회

- 개최일시: 2021년 1월 27일 (수) 18:00

- 안건 통지일: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호영	김광옥	김주원	
1. 위원 성명	윤호영	김광옥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안건				
가. 1호안건 제5기(20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특이의견없음			
나. 2호안건 2021년 기부금 한도설정 및 운용 계획	특이의견없음			
다. 3호안건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진	특이의견없음			
5. 의결안건				
가. 1호안건 본사(판교오피스) 사무공간 임차 계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

- 개최일시: 2021년 2월 25일 (목) 18:30
- 안건 통지일: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윤호영	김광옥	김주원	
1. 위원 성명	윤호영	김광옥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안건				
가. 1호안건 정관 일부 변경	특이의견없음			
나. 2호안건 채권발행	특이의견없음			
다. 3호안건 주요 주주와 당행 간의 거래	특이의견없음			
라. 4호안건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특이의견없음			

마. 5호안건 2021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심의 의결	특이의견없음			
바. 6호안건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운영지침 개정	특이의견없음			
<b>5. 의결안건</b>				
가. 1호안건 인사 부문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4차 운영위원회

- 개최일시: 2021년 3월 15일 (월) 17:30
- 안건 통지일: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윤호영	김광옥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안건				
-	-			-
<b>5. 의결안건</b>				
가. 1호안건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2021년 제5차 운영위원회

- 개최일시: 2021년 3월 22일 (월) 16:00
- 안건 통지일: 위원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윤호영	김광옥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심의안건				
가. 1호안건 준법감시인 권태훈 선임	특이의견없음			
나. 2호안건	특이의견없음			

주요 주주와 당행 간의 거래					
다. 3호안건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특이의견없음			
라. 4호안건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특이의견없음			
마. 5호안건	이사회 의장(선임사외이사) 선임	특이의견없음			
바. 6호안건	운영위원회규정 폐지	특이의견없음			
<b>5. 의결안건</b>					
가. 1호안건	여신전결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호안건	커뮤니케이션 담당 업무집행책임자 김재곤 선임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운영위원회 평가의 목적은 당행 운영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가 당행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위 목적을 위해 이사회가 매년 전년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점검활동을 실시해왔으나, 21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동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카카오뱅크는 2021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권고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1. 보수위원회

### 가. 총괄

당행은 금융과 ICT 융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두 분야의 융합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보수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는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수립·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행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당행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행 이사회규정 제12조 제1항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1조, 제25조를 근거로 2017년 1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보수위원회의 사외이사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구성

#### 1) 총괄

당행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보수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임된 8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임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 소속의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수체계에 대한 리스크 관리 측면을 감안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에서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인 신보선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에 참여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구분	금융, 회계, 재무 분야 종사경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여부	약력
진재욱	사외이사	해당	해당	前 UBS 자산운용 싱가포르 대표

이계순	사외이사	해당	-	前 우체국 금융개발원장 前 서울채신청장
신보선	사외이사	해당	해당	前 서울보증보험 전무
김주원	기타비상무이사	해당	-	現 카카오뱅크 이사회의장 前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前 카카오 부회장
윤호영	사내이사	해당	-	前 Daum Communication 경영지원 본부장 前 (주)카카오 모바일뱅크TFT 부사장 現 (주)카카오뱅크 대표이사

-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구분	금융,회계,재무 분야 종사경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여부	약력
황인산	사외이사	해당	-	前 하나은행 부행장
신보선	사외이사	해당	해당	前 서울보증보험 전무
김주원	기타비상무이사	해당	-	現 카카오뱅크 이사회의장 前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前 카카오 부회장

## 2) 구성원

-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

성명	구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sup>1)</sup>
진재욱	사외이사	위원장	2020. 3. 30	2021. 1. 2 <sup>2)</sup>
이계순	사외이사	위원	2020. 3. 30	2021. 1. 2 <sup>2)</sup>
신보선	사외이사	위원	2020. 3. 30	2022. 3. 29
김주원	기타비상무이사	위원	2020. 3. 30	2022. 3. 29
윤호영	상임이사	위원	2019. 1. 3	2021. 1. 2 <sup>2)</sup>

주1)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됨

주2) 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주총까지 연장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시에 연장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진재욱 이  
사, 이계순 이사, 윤호영 이사의 임기는 2021. 3. 30까지 연장됨

-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명	구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sup>1)</sup>
----	----	----	-----	---------------------

황인산	사외이사	위원장	2021. 3. 30	2022. 3. 29
신보선	사외이사	위원	2021. 3. 30	2022. 3. 29
김주원	기타비상무이사	위원	2021. 3. 30	2022. 3. 29

주1) 위원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동시에 만료됨

### 3)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은행에 한함)

당행의 위험관리 부서로는 CRO팀 소속 리스크기획팀, 건전성관리팀, 신용리스크정책팀, 신용리스크모델링팀, 전사리스크관리팀 총 5개 팀이 있으며, 준법감시부서로는 준법감시/법무팀, 자금세탁방지팀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위험관리부서(CRO팀)는 37명,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에는 48명(변호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부서는 평균 경력 10.7년, 준법감시부서는 평균 경력 10.8년의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경력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 권한과 책임

### 1) 총괄

당행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수, 보수체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운영지침 제3조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시 당행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행 보수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 제외)에 대한 보수체계를 비롯하여 임원평가기준 및 보수안을 심의·의결 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1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0년도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과 2021년 사내이사 및 임원보수사항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행 보수위원회는 2021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0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당행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성과보수를 결의하는 보수위원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21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 구조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행은 보수위원회규정에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소집방법, 결의방법, 의결사항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있으며,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 이상을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수위원회가 보수체계에 관하여 의결 시 리스크 관리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보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는 성과급 이연 지급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2021년 7월 29일 개최된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 당행의 성과보수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2021년 7월 29일 개최된 제4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 및 평가방법 등 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였습니다.

####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내부감사책임자 및 위험관리책임자(CRO)를 제외한 지배구조법에 따른 당행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적용 (단, 2021년 12월 말까지 당행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없음)

② 해외 : 해당 없음

####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보수위원회규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내부감사책임자 및 CRO는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정책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2021년 3월 3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의 임원 보수 결정 대상자는 사내이사 2명, 최고기술책임자(CTO) 1명, 최고인사책임자(CHRO) 1명,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1명, 최고서비스책임자(CSO) 1명 등 총 6명입니다.

이후 신규 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선임 당시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보수를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의 임원 보수를 심의, 의결하였고, 2021년 10월 28일 제6차 보수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CCO)의 임원 보수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당행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및 개인의 단기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9명	대표이사 1명, 부대표 1명 최고기술책임자 1명, 최고인사책임자 1명, 최고비즈니스책임자 1명, 최고서비스책임자 1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 1명,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1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1명
금융투자업무담당자	0명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대상자	0명	

##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 1) 의사결정 절차

당행의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라 보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관하여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2) 활동내역 개요

위원회는 2021년 총 8회의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21건의 심의 및 결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결의 안건으로는 2021년도 임원평가결과 및 성과급 지급(안), 2021년도 임원보수(안), 2021년도 임원평가 기준(안) 등이 있으며, 보수위원회 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100% 입니다.

### 3) 회의 개최내역

가) 2021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1.3.3. (09:30~11:30)

(안건 통지일 : 2021.3.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	----------	------

1. 위원 성명	진재욱	이계순	신보선	김주원	윤호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가. [심의 1호안건] 임원퇴직급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심의 2호안건]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결의 1호안건] FY2020 임원 평가결과 확정 및 성과급 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sup>1)</sup>	가결
라. [결의 2호안건] FY2021 임원보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sup>1)</sup>	가결
마. [결의 3호안건] 사외이사 보수변경(안)	의결권 제한	의결권 제한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가결
바. [결의 4호안건] 임원복리후생 지원(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결의 5호안건] 2020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심의 및 결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 참석 제한을 동반한 의결권 제한

나) 2021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1.3.30. (15:00~15:30)

[안건 통지일 : 2021.3.30. 소집절차생략 동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인산	신보선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가. [결의 1호안건]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가결
나. [결의 2호안건] 신규 선임 임원보수(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1년 제3차 보수위원회 : 2021.7.26. (14:00~15:30)

[안건 통지일 : 2021.7.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인산	신보선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가. [심의 1호안건]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심의 2호안건] 보수위원회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결의 1호안건] FY2021 임원평가(안)	반대	반대	반대	부결

라) 2021년 제4차 보수위원회 : 2021.7.29. (09:15~09:30)

[안건 통지일 : 2021.7.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인산	신보선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가. [결의 1호안건] FY2021 임원평가 수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1년 제5차 보수위원회 : 2021.8.13. (16:00~16:30)

[안건 통지일 : 2021.8.1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인산	신보선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가. [결의 1호안건] 당행 기업공개(IPO) 완료에 따른 특별상여 지급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	----	----	----

바) 2021년 제6차 보수위원회 : 2021.10.28. (09:30~10:00)

[안건 통지일 : 2021.10.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인산	신보선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가. [결의 1호안건] 신규 선임 임원보수(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21년 제7차 보수위원회 : 2021.11.4. (10:00~10:30)

[안건 통지일 : 2021.1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인산	신보선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가. [결의 1호안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세부사항 결정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가결

아) 2021년 제8차 보수위원회 : 2021.12.28. (09:00~10:00)

[안건 통지일 : 2021.12.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황인산	신보선	김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 안건				
가. [결의 1호안건] FY2021 임원평가결과 확정 및 성과급 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결의 2호안건] FY2022 임원보수(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결의 3호안건] 신규 선임 임원보수(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결의 4호안건] 사외이사 보수(안)	의결권 제한	의결권 제한	찬성	가결
마. [결의 5호안건] 임원 복리후생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4) 평가

보수위원회 평가의 목적은 당행 보수위원회가 법령,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당행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위 목적을 위해 이사회가 매년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설문 방식을 통해서 평가를 하며, 점검항목에는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안건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이사회 보고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며 평가 결과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되어 당해 년도 이사회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 2. 보수체계

### 가. 주요사항

####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부서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행의 성과측정은 플랫폼 지표(성장성 포함), 수익성 지표, 건전성 지표 등 계량적 지표와 전략과제 수행, 협업지수 등 비계량적 지표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당행만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연계하고자 하며 플랫폼 가속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객수, 활동성지표 및 비이자수익항목 등의 성장지표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확대 부분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공적인 자본확충을 위한 기

업공개(IPO) 등의 지표 등 여러 대, 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 지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객 만족을 통한 규모의 확대 및 유지에 필요한 전략과제 수행 능력과 협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량/비계량 다양한 지표 운영을 통해 당행의 미래 수익 창출 기반 마련 및 경쟁우위 확보 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손익목표, 성장목표 등의 재무지표 및 자산건전성과 기업공개(IPO)를 통한 성공적인 자본확충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전략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관리역량, 비계량평가(정성적 평가) 항목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의된 평가 기준에 따라 당행의 성과측정 지표, 재무성과 지표 및 전사 주요 전략과제에 대한 지표를 연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 임원별 당해년도 전략목표 수립 및 비계량평가(정성적 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보수 지급률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당행은 성과평가를 통해 산출된 성과보수액 중 60%를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3년간에 걸쳐 3:3:4의 비율로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하며, 지급확정기간 중 업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성과 보수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수위원회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중 이연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며, 상기 나)항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합니다.

###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행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 결정 대상은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내부감사책임자,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을 제외한 지배구조법에 따른 당행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인바, 이들에 대한 전체 보수액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 등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을 변동보수액(성과보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 중 당해년도 성과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성과보수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이연하여 지급하는 성과보수

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지급 결정 시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주식연계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발생한 성과보수 이연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 시 설정된 한국투자금융지주(주)와 연계하여 적용하고, 2020년 이후 발생한 성과보수에 대한 이연지급분은 당행 주가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 다)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중 상당 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6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40% 금액은 3:3:4의 비율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 라)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앞서 다) 항에서 이연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성과보수 지급 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장기 성과와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수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은행에 한함)

당행 위험관리책임자(CRO) 및 준법감시인의 경우 업무성과 목표 설정 시, 당행의 정량적인 재무적 경영성과의 지표와 연계하지 않고, 고유 직무의 수행 과정 및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 보수를 지급합니다. 위험관리부서와 준법감시부서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에 있어 당행 경영성과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지양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내부감사책임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보수체계를 운영하여 독립성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행은 전 직원 개별 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과연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사업전략과 경영성과 및 장기적 관점의 사업경쟁력 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 성장성 및 전략과제 달성에 의거한 성과급 지급으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성과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행은 모든 직원의 담당업무 및 경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개별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개인별 업무수행의 성과 창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성과리뷰세션), 협업을 진행하였던 직원 간의 상호 평가 및 조직장 의견 반영 등을 통하여 360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직원 개개인의 역량 및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 및 결과를 종합·판단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2021년도에는 격화되는 인재 영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경쟁력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당행의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평가보상체계에 대한 검토와 시행을 통하여 임금체계 합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2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사외이사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 적용 대상이 되는 임원(사내이사 2명, 최고기술책임자(CTO) 1명, 최고인사책임자(CHRO) 1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1명,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1명, 최고서비스책임자(CSO) 1명,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1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1명, 총 9명) 중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행 보수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은행에 한함)

당행의 성과측정은 총당금 반영 전 영업이익 지표를 연 단위로 산출한 손익기준의 수익성지표, 고객수 및 수·여신 증가를 통한 성장성지표 및 전략과제 및 위기대응 등 비계량적 항목들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자산건전성 항목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본의 적정성 관리로 BIS비율, 외부감사 조치사항, 대외평판 등의 운영리스크 항목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로 인식하여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임원 등의 성과급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은행 전체의 다양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sup>주1)</sup>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sup>주2)</sup>		임직원수 (C) <sup>주3)</sup>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20년)	724.15	131.67	5.49	913	0.79
당해년도 (2021년)	1,577.32	1,223.32	1.29	1,031	1.53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함.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당해년도가 2021년도인 경우 2020년말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금액 기재

주3) 임직원수(C)는 해당년도 말 재직 임직원 기준(인턴포함)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	비등기	행원
전년도 (2020년)	보수총액(A)	16.55	20.16	687.44
	성과보수액	6.09	5.30	74.04
당해년도 (2021년)	보수총액(A)	182.22	93.09	1,302.01
	성과보수액	10.32	8.00	89.64

주) 임직원보수총액(A)은 성과보수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함.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sup>주1)</sup>	기본급 <sup>주2)</sup>	성과보수액 <sup>주2)</sup>		
			이연지급대상		
전년도 (2020년)	임원	16명	24.89	17.50	5.8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추후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sup>주1)</sup>	주식연계상품 <sup>주2)</sup>	기타 <sup>주3)</sup>	
전년도 (2020년)	임원	17.50	14.10	-	3.40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추후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1) 주식: 발생 익년도 2월말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

주2) 주식연계상품: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주1) 주2) 최종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sup>주1)</sup>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20년)	임원	9.51	-	9.5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추후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1) 이연보수액: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 특정년도 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하였으며, 2020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2021년 1/4분기 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20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0년)	임원	9.51	3.51	-	6.00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추후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임원	9.51	5.80	3.42	0.29	-	-

(2020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추후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2020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0년(t기) 발생분, 2019년(t-1기) 발생분, 2018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sup>주4)</sup>
		축소액 <sup>주1)</sup>	직접적 조정 <sup>주2)</sup>	간접적 조정 <sup>주3)</sup>	
전년도 (2020년)	임원	△0.43	-	△0.43	9.5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추후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0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임원	‘해당사항 없음’	

(2021년)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주) 해당년도 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0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당해년도 (2021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성의 보장상여는 보장성 상여금에서 제외 (이하 동일)

주) 기존고용자: 당해 회계연도 이전부터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해당된 자를 기재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0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당해년도 (2021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 신규고용자: 당해 회계연도 중에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임원 및 금융 투자 업무 담당자에 해당된 자를 기재

10) 일회성 인센티브<sup>주1)</sup> 지급 건수 및 금액(은행에 한함)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일회성 포상금 <sup>주)</sup>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0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주)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

카카오뱅크

첨부. 관련 규정

# 정 관

소관팀 : 준법감시/법무팀

2016. 01. 18 제정

2016. 02. 17 개정

2016. 03. 11 개정

2016. 12. 23 개정

2017. 03. 23 개정

2018. 03. 22 개정

2018. 12. 21. 개정

2019. 03. 25. 개정

2019. 11. 22. 개정

2020. 03. 30. 개정

2021. 03. 30.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당행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영문으로는 KakaoBank Corp.이라 하고, 이하 “당행”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0. 03. 30.>

**제 2 조(목적)** 당행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은행법」제27조에 의한 은행업무
2. 「은행법」제28조에 의한 겸영업무
3. 「은행법」제27조의2에 의한 부수업무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에 관련되는 업무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당행은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② 당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방법)** ① 당행의 공고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akaobank.com)에 게재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공고는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로 한다. <개정 2021. 03. 30.>

**제 6 조(1주의 금액)** 당행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7 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행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80,000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및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당행이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개정 2021. 03. 30.>

② 당행은 보통주식과 배당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이하 위 언급된 주식들 중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종류주식"이라 함)을 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③ 당행이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단, 당행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3. 30.>

④ <삭제 2019. 11. 22.>

⑤ <삭제 2019. 11. 22.>

⑥ 당행은 주권 및 신주인수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2019. 11. 22., 개정 2021. 03. 30.>

**제 9 조(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당행이 발행할 배당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당행이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거나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당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배정할 신주의 종류 및 내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한 여부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전환주식)** ① 당행은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과 동수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은행법 기타 관련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상환주식)** ① 당행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당행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당행이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당행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당행은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행이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당행이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제 12 조(신주인수권)** ① 당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개정 2021. 03. 30.>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당행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당행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 정부, 예금보험공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다수인(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5.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6.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 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③ 제2항 제2호 또는 제6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 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 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④ 제2항의 경우 당행은 「상법」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 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 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21. 03. 30.>

**제 13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당행은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행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단, 당행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3. 30.>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1. 22.>

**제 15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03. 30.>

**제 15 조의2(주주명부)** ① 당행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2.>

② 당행은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3. 30.>

③ 당행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03. 30.>

**제 16 조(주주명부의 기준일)** ① <삭제 2021. 03. 30.>

② 당행은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행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제 17 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당행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당행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당행은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당행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1. 03. 30.>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당행의 경영혁신 등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당행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당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설 2021. 03. 30.>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03. 30.>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개정 2021. 03. 30.>

2. 당행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3. 30.>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개정 2021. 03. 30.>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행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당해 임직원이 은행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감독기관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거나 문책처분 요구에 의해 면직되는 경우 <개정 2021. 03. 30.>

4. 당행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7 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당행은 상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21. 03. 30.>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 03. 30.>

⑤ 당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야 한다.

1. 당행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장 사 채

**제 18 조(사채의 발행)** ① 당행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당행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신설 2021. 03. 30.>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1. 03. 30.>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03. 30.>

**제 20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당행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당행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21. 03. 30.>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3. 30.>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1. 03. 30.>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1. 03. 30.>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03. 30.>

**제 20 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행은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2., 개정 2021. 03. 30>

**제 21 조(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① 당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당행은 이사회 결의로 액면총액이 3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당행이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다만,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당시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재조정의 조건 및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내용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2.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 22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를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3. 30.>

## 제 4 장 주주총회

**제 23 조(소집시기)** ① 당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4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 03. 30.>

**제 26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7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9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30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당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행은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

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서면결의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당행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의 전일까지 당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4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이사회

**제 35 조(이사회 구성)** ① 당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은행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당행에 4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사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다.

**제 36 조(이사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만, 당행 이사로 선임된 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그 외 관련법령에 따른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② 당행은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당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자를 제외한다)

2. 그 외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 37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연임 시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선임일부터 기산한다.

⑤ 사외이사는 당행에서 6년 이상,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03. 30.>

⑥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⑦ <삭제 2020. 03. 30.>

**제 39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0 조(대표이사 및 이사회회장 등의 선임)** ① 당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개정 2020. 03. 30.>

②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41 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당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 직무대행자는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42 조(사외이사의 성실의무)** 사외이사는 회일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당행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 조** <삭제 2021. 03. 30.>

**제 44 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당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당행 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당행은 분기 중 경영성과를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03. 30.>

⑥ 당행의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⑦ 이사회는 소집·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는 결의로 정한다.

**제 46 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7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8 조(위원회)** ① 당행은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위험관리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5. <삭제 2021. 03. 30.>

②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5조 제2항,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 및 감사위원회의 그룹장 등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 외의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정한다.

**제 49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을 제외한 구체적인 이사의 보수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

##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50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당행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해임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3. 30.>

③ 감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1인 이상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된 사외이사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1. 03. 30.>

⑤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는 당행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본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행의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및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은 이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1. 03. 30.>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를 제외한다) 및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당행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1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당행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신설 2021. 03. 30.>

⑨ 감사위원회는 당행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03. 30.>

**제 52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7 장 회 계

**제 53 조(사업년도)** 당행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당행의 최초 사업연도는 당행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54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당행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본변동표
5. 현금흐름표
6. 주식
7. 연결재무제표
8. 그 밖에 당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위원회는 위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 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이익금의 처분)** 당행은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6 조(주식의 소각)** 당행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당행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7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당행이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당행은 각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으로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4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8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 정관

---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행에 귀속한다.

### 부 칙(2016. 01. 18)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위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정관을 개정하기로 한다. 또한, 은행업 본인가 신청 전에 적용 법률을 반영하여 이 정관을 개정하기로 한다.

**제 2 조(발기인)** 회사의 정관을 위와 같이 정하고 발기인 전원이 아래와 같이 2016. 01. 18 기명 날인하다.

발기인: 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대표이사 김남구 (인)

발기인: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대표이사 임지훈 (인)

### 부 칙 (2016. 02. 1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03. 1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12. 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는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03. 23)**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는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03. 22)**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1)**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3. 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등록에 관한 적용 특례)** 제8조 제6항, 제14조 제4항, 제20조의2는 당행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제8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5조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부 칙 (2020. 0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는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0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관련법령상 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당행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지배구조내부규범

소관팀: 전략팀(2 차 조직)

2017. 01. 03 제정

2017. 02. 24 전면 개정

2017. 03. 29 개정

2017. 12. 22 개정

2020. 03. 30. 개정

2020. 05. 29. 개정

2021. 01. 05. 개정

2021. 03. 30.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이하 "당행"이라 한다)가 주주와 당행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5. 29.>

### 제 2 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로서 등기이사를 말한다.
2. '임원' :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당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경영진' : 임원 중에서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이사회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2 조에 따른 이사회 및 같은 법 제 16 조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를 총칭하여 말한다.
6. '금융관계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 제 3 조 (공시)

- ① 당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제정·변경일부터 7 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당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당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조 제 5 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 2 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하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다만, 당행의 이사회등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2 조 제 3 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공시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 ⑤ 이 규범과 관련된 공시의 주체, 점검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행의 「공시규정」 및 「공시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 4 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당행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장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 절 이사회 의 구성현황

#### 제 5 조 (이사회 의 구성)

- ① 이사회는 4 인 이상 12 인 이하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사외이사를 3 인 이상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제 6 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 2 항에 따라 선임된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⑥ 당행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 5 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 제 7 조 (이사의 자격요건)

- ① 이사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행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사의 직을 잃는다. 다만, 제 7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4 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당행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행정처분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람

### 제 8 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 1 호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1. 03. 30.>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당행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당행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당행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당행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당행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당행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당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당행의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당행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 제 9 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회는 「상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에 따른다.
  -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의 수립에 관한 사항
  - 6. 대주주·임원 등과 당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7.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8. 최고경영자(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평가 및 상시적인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9. 「이사회규정」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분기별 경영계획 이행실적 및 종합적인 경영현황 분석
  - 2.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 ④ 이사회는 주주 및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당행의 장기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삭제 2020. 03. 30.>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상법에서 정한 이사회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 11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당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당행의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당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②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 이사회 및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 3. 당행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 ④ 이사는 당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이사는 당행에 대하여 다음의 책임을 진다.
  -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당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제 1 호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 1 호의 책임이 있다.
  - 3. 제 2 호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⑥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 3 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⑦ 이사는 재임기간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당행(계열회사 포함)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의 구성원으로서 당행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당행 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 ③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행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당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사외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등이 당행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는 제 4 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 ⑥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당행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행 또는 제 3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제 13 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 ① 당행은 사외이사가 당행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행의 영업·재무, 그 밖의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당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당행은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 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 14 조 (이사의 선임절차)

- ① 이사는 이사회 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사의 임기 및 사외이사 연임기준)**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연임 시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④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⑤ 사외이사는 당행에서 6년 이상,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 재임 할 수 없다. 다만, 제 3항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03. 30.>
- ⑥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이사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 1. 임기의 만료
  -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 3.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정관 또는 내규상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 4.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특별결의된 경우
- ② 이사가 임기의 만료 전 사임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보궐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2 조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 제 5 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제 17 조 (이사회의 소집절차)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은 기재한 소집통지서 및 회의자료를 이사회 개최일 3 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18 조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는 각자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 6 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 19 조 (이사회 운영실적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및 책임, 주주 및 고객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 제 20 조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 ① 당행은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재선임시에 참고한다.
- ③ 당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 1 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당행은 제 1 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 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제 21 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당행은 이사회내 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삭 제 2021. 03 .30.>

- ② 당행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제 1 항에 따른 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22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제 23 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1 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③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된 사외이사가 정관 제 50 조 제 2 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1. 03. 30.>
-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행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4.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5.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⑥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제 24 조 (위험관리위원회)

-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당행의 위험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2.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승인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기상황분석결과가 반영된 자본관리(내부자본 한도설정 포함) 및 조달계획
  9.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10. 정부 정책 반영 또는 은행간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진이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5 조 (보수위원회)**

- ① 보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 인 이상을 포함하여 8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보수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보수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상체계가 당행의 위험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 및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제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당행의 성과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위험과 연계되도록 의사결정,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연차보상평가(annual compensation review) 실시 및 그 결과를 감독당국·주주에게 제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 ④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보수위원회의 결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6 조 <삭 제 2021. 03. 30.>**

**제 2 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위원회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28 조 (임원의 범위)**

본 장에서 임원이라 함은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이하 "등기이사인 임원"이라 한다)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이하 "등기이사 아닌 임원"이라 한다)를 총칭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3. 30.>

**제 29 조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은 제 7 조(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0 조 (등기이사 아닌 임원의 자격요건)**

- ①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행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은행업 전반에 대한 경험 및 이해가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 31 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최근 5 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1 항 각 호 및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 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 3 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제 6 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 36 조의 3 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③ 당행은 준법감시인이 제 1 항 제 1 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32 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1 항 각 호 및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 조 제 3 항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개정 2021. 01. 05.>
  - ③ 당행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제 1 항 제 1 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 제 33 조 (은행에 대한 임원의 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당행을 대표하고,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당행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행의 업무를 분장하며, 제 11 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 5 항, 제 6 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전결규정」상의 권한을 영위하며,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관련 법령, 정관, 당행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 34 조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발언 및 중요사항 직접 보고권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권
-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 1.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 2.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의 조사
  - 3. 그 외 내부통제 관련 업무의 총괄

### 제 3 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 35 조 (임원의 선임)

- ① 등기이사인 임원의 선임은 제 14 조(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등기이사 아닌 임원 선임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내부감사책임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개정 2021. 03. 30.>
- ③ 등기이사인 임원의 임기는 제 15 조(이사의 임기 및 사외이사 연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등기이사 아닌 임원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 년 단위로 재계약 및 별도의 계약기간을 운용할 수 있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하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03. 30.>
- ⑤ 당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당행의 홈페이지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6 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은행의 본질적 업무(은행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은행의 겸영업무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업무

**제 37 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당행의 의무)**

<개정 2021. 01. 05., 2021. 03. 30.>

- ① 당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당행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03. 30.>
- ② 당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당행 및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 ④ 당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내부감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03. 30.>

**제 38 조 (임원의 퇴임 등)**

- ① 등기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 16 조(이사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한다. 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임기의 만료
  -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 3.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정관 또는 내규상 당연 퇴직 또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 4. 기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선임절차에 준하여 퇴직처리)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 39 조 (임원에 대한 교육제도)**

- ① 당행은 신입임원에 대하여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 ② 당행은 임원에 대하여 수시로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40 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당행은 장기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경영승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제 41 조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 ①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규정」, 「임원보수규정」 및 「기타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 ② 제 1 항의 성과측정 지표로는 재무지표, 개별 KPI 및 비계량 평가 등을 활용하여 정한다.
- ③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급에 반영한다.

**제 42 조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 ① 임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당행은 임원에 대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연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사외이사의 보수는 당행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보수위원회가 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임원보수규정」 및 「기타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한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43 조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로서 당행을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 1. 주주, 관련기관 등 당행의 이해관계인과의 의사교류
  - 2. 당행 업무 전반의 총괄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
  - 3. 기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가 요청하는 역할
- ②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의 결의로 1 인 또는 수인을 선임한다. <개정 2020. 03. 30.>
-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4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 ① 당행은 당행의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대표이사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안정적 경영승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경영승계 절차 개시 사유는 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유고 등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행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당행 운영 및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 회 이상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 ⑤ 이사회는 대표이사 승계원칙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 45 조 (대표이사의 경영승계 지원)**

- ① 인사팀(2 차 조직)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1. 05.>
- ② 인사팀(2 차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1. 05.>
  - 1.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 2.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 3. 그 밖에 대표이사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③ 인사팀(2 차 조직)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 2 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1. 05.>

#### 제 46 조 (대표이사의 자격)

- ① 대표이사는 당행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당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47 조 (대표이사 후보자의 추천절차)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이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검증한 후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당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 48 조 (대표이사 추천 관련 공시)

당행은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시지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대표이사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 제 49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당행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퇴임에 관한 사항은 제 14 조(이사의 선임절차), 제 15 조(이사의 임기 및 사외이사 연임기준) 및 제 16 조(이사의 퇴임사유 및 퇴임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배구조내부규범

---

- ②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당행은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를 명문화하여 운영한다.

### 부칙 (2017. 01. 03)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7. 1. 6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7. 02. 24)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7. 02. 24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7. 03.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7. 03. 27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7. 12. 22)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7. 12. 22 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0. 03. 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0. 03.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0. 06.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1. 05)**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1. 01.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3. 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1. 03.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 3 조 제 2 항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 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 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 다.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한다. 이하 제 3 호에서 같다)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
  - 라. 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당행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 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 바. 사외이사 후보와 당행(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 추천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 파.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각 사항
  -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 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제 4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및 운용현황
  -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 카. 당행과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 타. 최근 5 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 최고경영자(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가. 대표이사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
  - 나. 당행의 대표이사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 라. 대표이사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내역
  - 마.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
  - 바. 이사회의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 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8.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권고·지시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9. 그 밖에 금융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별표 2]**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 3 조 제 3 항 관련)**

1.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2.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4.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5.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 인 기준 최고 지급액
6.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이사회규정

소관팀: 전략팀(2 차 조직)

2016. 03. 11. 제정

2017. 01. 03. 전면개정

2017. 02. 24. 개정

2017. 03. 29. 개정

2017. 12. 22. 개정

2020. 03. 30. 개정

2020. 05. 29. 개정

2021. 01. 05. 개정

2021. 03. 03. 개정

2021. 12. 2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03. 03.>
-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운영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 3 조 (구성)** 이사회는 4 인 이상 12 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 중 사외이사는 3 인 이상으로 한다. 단, 사외이사는 비상임이사, 사내이사를 포함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제 4 조 (이사의 권한)

-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당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행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 요청
- ③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행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재적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당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사의 역할)** 이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2. 당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
3. 당행의 기업가치 제고

### 제 6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및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3. 당행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충실의무를 진다.
  1. 당행의 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 또는 이득행위의 개입
  2. 당행에 해가 되는 경쟁행위
  3.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행위
- ③ 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는 의무를 진다.
- ④ 이사는 당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7 조 (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의장은 "이사회 의장 직무기술서"[별표 1]에 의거하여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④ 당행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 3 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선임사외이사
  2. 선임사외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 중 연장자

<개정 2021. 03. 03.>

### 제 8 조 (대표이사)

- ① 당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 해임한다.

<개정 2021. 03. 03.>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대표가 사고, 기타의 사유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이 불가한 경우 직무대행순위는 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05. 29., 2021. 01. 05., 2021. 12. 21>

**제 9 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03.>

**제 10 조 (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 및 회의자료를 이사회 개최일 5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팩스전송,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모바일 통신,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 11 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 ②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4. 전행 경영전략 및 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의 편성, 이월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 6. 「이사회운영지침」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차입, 자산거래
- 7. <삭제 2021. 03. 03.>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8.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 8 조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 9. <삭제 2021. 03. 03.>
- 10.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11.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해임
- 12.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개정 2021. 03. 03.>
- 13. <삭제 2020. 03. 30.>
- 14.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 15.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6. 준법감시인의 임면
- 17. 정관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 다만, 법령 기타 외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18. <삭제 2021. 03. 03.>

**[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19. 발행가격과 전환가격을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발행의 결정

20. 자본금의 변경, 제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21. 자산재평가

**[기타사항]**

22.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당행간의 거래승인에 관한 사항 및 대주주·임원 등과 당행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에 관한 사항

23.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사에 대한 성과연동주식의 부여 및 취소

24. 내부통제기준 등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5.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6. 「은행법시행령」 제 20 조의 7 제 8 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 29 조의 5 제 1 항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등

27. 연간 기부금 및 출연금 운영한도 설정

28. 연간 출연금 운영한도를 초과하는 건별 출연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29. 원리금, 연체료, 보증료, 수수료 또는 기타 지연배상금의 사후적 특별감면 또는 유예·출자전환. 다만, 동일인당 5 억원 이하이거나 특수채권, 회사정리·화의절차 진행업체 및 파산법에 의한 청산절차 진행업체 채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업체 채권 또는 채권기관협의회 결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0. 고정자산의 특별상각

31. 당행 이용자에게 10 억원(동일한 업무의 기간 중 제공한 모든 이익의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 03. 03.>

32. 당행의 자사주 취득

33. 건당 3 억원 초과외 기부금 <개정 2021. 03. 03.>

34. <삭제 2021. 12. 21.>.

35. 본점의 이전

36. <삭제 2020. 03. 30.>

37. 「은행법」 제 35 조의 2 제 4 항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 35 조의 3 제 4 항에 의한 지분증권 취득

38.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상법 제 542 조의 9 제 3 항에 의한 승인 <개정 2021. 03. 03.>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2 제 1 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내부거래 <개정 2021. 03. 03.>

40.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1. 관계법령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

42. 이사회 내 위원회가 특별히 부의하는 사항

43.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분기별 경영계획 이행실적 및 종합적인 경영현황 분석

2. 기부금과 출연금 운영현황

3.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출연금에 대한 사전 보고
  4.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 03. 03.>
  5.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의 결과
  6. 자금세탁방지업무 등 관련 이사회 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
  7.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 2 항 제 22 호의 승인은 매년 일괄승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⑤ <삭제 2021. 03. 03.>
- ⑥ 이사회규정 제 11 조 제 2 항, 제 3 항의 기부금 및 출연금은, 관련 법령상 요구되거나 당행의 통상적인 사업운동을 위하여 외부 기금 등에 경상적으로 납부하는 사업비 성격의 지출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1>

### 제 12 조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상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을 준수하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03.>
-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③ 각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 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④ 사외이사는 보수위원회에 연속하여 2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 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당행은 제 4 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제안설명)** 이사회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안건 관련 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2 차 조직장 및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29.>

**제 14 조 (의견의 청취)**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 외부 관계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03.>

### 제 15 조 (의결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는 각자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16 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그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같이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손실보상)** 당행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현직 각 이사에 대하여 동인이 전·현직 이사라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 기타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판결금액, 과징금, 벌금, 화해금액, 기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 (평가)**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② 이사회 지원 2 차 조직은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 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29.>

**제 19 조 (이사회 지원)**

- ① 당행은 사외이사의 업무 및 지시사항 처리를 지원한다.
- ② 각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간사 및 지원 2 차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05. 29.>

**부칙 (2016. 03. 1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03.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1. 0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01.06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02. 2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02.24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03.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03.27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2. 22)**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12.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3. 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03.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06.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1. 05.)**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1.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3. 0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3. 30.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관련 법령상 상장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당행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21. 12. 2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2. 21.부터 시행한다. 단, 제 8 조는 2022. 01. 01 부터 적용하며, 제 10 조는 정관 제 45 조의 개정시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이사회 의장 직무기술서

**이사회 의장 직무기술서**

1. 이사회 활동에 있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도력을 발휘한다.
2. 이사회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노력한다.
3. 이사회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역의 효율적인 절차를 확립한다.
4. 이사회역의 일정을 계획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위원장과 협의한다.
5. 각 이사와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한다.
6. 이사회역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토의와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시간을 배정한다.
7. 이사회역이 정한 경영목표를 경영진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한다.
8. 이사회역에 대한 개별 이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기여를 촉진한다.
9. 이사회역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분명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한다.
10.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주요내용을 이사회역에 전달한다.

(별표 2) 이사회부의대상 주요규정

**이사회부의대상 주요규정**

1.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운영지침
2. 이사회 내 위원회규정 및 운영지침
3. 내부회계관리규정
4. 내부통제기준
5. 위험관리기준
6. 지배구조내부규범
7. 임원보수규정
8. 기타임원보수규정 <개정 2021. 03. 03.>
9. 임원퇴직급여규정
10.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2021. 03. 03.>
11. 최고경영자승계규정 <개정 2021. 03. 03.>
12. 위 각 호에 준하는 규정 또는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

(별표 3) <삭제 2021. 03. 03>

#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소관팀: 인사팀(2차 조직)

2017. 01. 03 제정

2017. 02. 24 개정

2020. 05. 29 개정

2021. 04. 29 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또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적용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단,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4. 29.>

- ③ 위원회는 임원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은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4. 29.>

**제 4 조 (구성)**

- ①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  
<개정 2021. 04. 29.>
- ②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 및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들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소집권자)**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서류와 함께 3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04. 29.>

**제 8 조 (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후보의 추천
2. 기타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9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 위원회 의결은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04. 29.>

**제 9 조의2 (결의사항의 통보)**

위원회는 임원 후보추천 관련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4. 29.]

**제 10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1 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외이사후보군 관리 등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인사팀장(2차 조직장) 또는 매니지먼트팀장(1차 조직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 간사를 지정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4. 29.>

**제 12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및

자구수정 등은 매니지먼트팀장(1차 조직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0. 05. 29>

**부칙 (2017. 01. 0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1. 06.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02. 24.)**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2. 24.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05.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6.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4.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4. 29. 부터 시행한다.

# 감사위원회규정

소관팀: 감사팀(2 차 조직)

2017. 01. 03 제정

2018. 10. 30 개정

2020. 07. 21 개정

2021. 03. 30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 (역할)**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결과평가,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개정 2020. 07. 21.>
2. 내부통제시스템의 설계·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업무의 통할
4. 감사조직의 개편 및 내부감사책임자 임면, 감사팀장(2 차 조직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개정 2021. 03. 30.>
5.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개정 2020. 07. 21.>
6.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7. <삭제 2020. 07. 21.>
8.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9. 관계법령,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10. 그 밖에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4 조 (권한)** ①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증명서, 확인서, 문답서 및 그 밖에 관계자료와 물품의 요구
2. 금고, 장부, 그 밖의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당행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위원회로부터 제 1 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령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각 사업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7. 21.>

**제 7 조 (경영정보 요구 등)**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행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 2 장 구성

**제 8 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 회의 위원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해임한다. 위원 중 1 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 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 9 조 제 17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 8 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 9 조 (위원장)** ①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순위는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일자 순으로 하며,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제 3 장 회의

**제 10 조 (회의 종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9 조 제 3 항을 준용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다른 위원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 3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간담회는 제 10 조 제 1 항에 의한 회의로 보지 아니한다.

**제 12 조 (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확정
4.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6.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7. 당행 및 자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8. 감사조직의 개편 및 내부감사책임자 임면, 감사팀장(2 차 조직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개정 2021. 03. 30>
9.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개정 2020. 07. 21.>
10. 「감사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11.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의 선정
12. 관련법령, 정관,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1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시스템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감사위원회규정

3. 「회계규정」의 제정 및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개정 2020. 07. 21.>
  4. 당행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5.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6. 준법감시인 소관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의 적정성 <개정 2020. 07. 21.>
  7.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8.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9.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받은 당행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 위반한 사실
  12.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감사관련 각종 보고의 청취 및 검토
  13. 자금세탁방지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검토 및 평가
  14. 당행의 「윤리강령」 제·개정 및 폐지 <개정 2020. 07. 21.>
  15. 「감사위원회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16. <삭제 2020. 07. 21.>
  17. 감독기관 및 감사팀(2차 조직)의 감사 결과
  18. 관련법령, 정관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19.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07. 21.>
1. 제 15 조에 의해 위원회가 내부감사책임자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주요사항 <개정 2021. 03. 30>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 1 항 제 10 호, 제 2 항 제 3 호, 제 6 호 및 제 14 호의 경우 개정내용이 조직개편 내용반영 등 경미한 사항이거나 의미의 변화가 없는 단순 자구수정인 경우에는 내부감사책임자의 전결로 처리하고 위원회에 개정 내용을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21. 03. 30>
- 제 13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내부감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03. 30>
- ② 위원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 4 장 감사 및 보고

**제 15 조 (권한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감사책임자에게 위임하며, 내부감사책임자는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3.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 1 항에서 위임한 내부감사책임자의 직무와 감사보조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03. 30>

**제 16 조 (권한 대행)** ① 감사위원의 미도착,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내부감사책임자가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개정 2021. 03. 30>

② 일상감사사항 등 제 15 조의 위임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감사책임자에게 위임한 사항은 내부감사책임자가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 03. 30>

③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내부감사책임자가 공람한다. <개정 2021. 03. 30>

**제 17 조 (이사회보고)**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연 1 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사회 부의 사항과 검토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 12 조 제 2 항 제 2 호, 제 9 호 및 제 13 호의 평가내용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2.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발견된 주요 쟁점사항
  - 3.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⑥ 제 5 항 제 1 호의 내용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실시하며, 그 평가 보고서를 본점에 5 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감사보조조직 및 감사록

**제 18 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내부감사책임자는 제 15 조에 의해 위임 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0>

**제 19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감사보조조직 및 내부감사책임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1 차 조직) 단위의 감사보조조직을 두고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1 차 조직장인 내부감사책임자를 둔다. <개정 2021. 03. 30>

② 감사보조조직에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개정 2020. 07. 21.>

② 간사는 내부감사책임자가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 03. 30>

**제 22 조 (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23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만, 조직개편 내용 반영 등 경미한 사항 및 자구 수정 등은 내부감사책임자의 전결로 처리하고 개정 내용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21. 03. 30>

### **부칙 (2017.01.0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01.06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하는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8.10.3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11.0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0.07.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7.21 부터 시행한다. 단,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2020.06.0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03.3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03.30 부터 시행한다.

#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소관팀: 리스크기획팀(2 차 조직)

2017. 01. 03. 제정

2017. 02. 24. 개정

2017. 12. 22. 개정

2019. 04. 23. 개정

2020. 05. 29. 개정

2021. 12. 29.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1 항 3 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당행 「정관」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미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사 중 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위원 및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회계나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그 순위는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일자 순으로 하며,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3 조(기능)** ①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하며 리스크관리전략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 조(결의 및 보고사항 등) ①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2. 당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5. 「위험관리기준」 및 「위험관리위원회규정」을 제외한 리스크관리에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위기상황분석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8.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유형별 리스크의 측정·관리 시스템 및 방법론 등의 주요 개발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
  - 나. 신용평가시스템의 주요 개발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신용리스크 측정요소(PD, LGD, EAD)의 추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9.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 승인에 관한 사항
10.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11. 정부 정책 반영 또는 은행간 협회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경영진이 위험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문별 리스크 관리 현황
2.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관리 결과
3. 규정 및 지침에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4.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협의회 주요 활동 내역
6.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한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해 사전심의한다.
- ④ 위임사항 : 위험관리위원회는 상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험관리협의회 또는 ALM 협의회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주요 이행사항을 보고받는 등 리스크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제 5 조(소집 및 안건의 배부)** ① 위원회는 매분기 1 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은 회의일 5 영업일 이전까지 배부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결의는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리스크팀장(1 차 조직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0. 05. 29.>

**제 9 조 (위원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0 조(규정 제·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및 자구 수정 등은 리스크팀장(1 차 조직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0. 05. 29.>

**부칙(2017.01.0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01.06.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하는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2.24.)**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02.24.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하는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2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01.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2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04.23.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6.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01.01. 부터 시행한다

# 보수위원회규정

소관팀: 인사팀(2 차조직)

2017. 01. 03. 제정

2017. 02. 24. 개정

2019. 12. 20. 개정

2020. 05. 29. 개정

2021. 02. 26. 개정

2021. 07. 29.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7. 29.>
2.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성과보수'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 외에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 보수위원회규정

**제 3 조(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당행 보수체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보수체계가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체계는 높은 보수를 위해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한다. 또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총성과보수액 지급으로 당행에 필요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행은 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수립·운영되도록 한다.

## 제 2 장 지배구조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8 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임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보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 인 이상 참여하게 하여 보수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위원 및 위원장은 다른 규정에서 달리정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매년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제 5 조(소집절차 등)**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소집목적에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 3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직접전달,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 통신, 인터넷 e-mail)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결의사항 등)**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보수위원회규정

2.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3.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연봉, 성과급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7. 그 밖에 성과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제 7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부의사항 중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결의에 의하거나 사후에 추인받을 수 있다.

**제 8 조(이사에의 보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통지 받은 이사가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 9 조(간사)** 위원회는 필요 시 인사팀장(2 차 조직장) 또는 매니지먼트팀장(1 차 조직장)을 간사로 둘 수 있고, 간사는 위원회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 간사를 지정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2. 26.>

**제 10 조(의사록)**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보관 한다.

### 제 3 장 보수구조 및 체계

**제 11 조(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① 당행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상당부분을 성과보수로 한다.

② 당행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제도는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1. 현재 및 미래의 잠재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2.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의 규모와 비용
3. 당기손익으로 계산된 잠재 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시기의 일관성
4. 상기 재무적 성과 외에 비재무적 지표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 마련

③ 당행은 전행, 팀, 개인 업무의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성과급 중 당기 현재보수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임원과 특정업무 종사자의 성과보수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29.>

④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의 기준 및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직원의 직무, 특성 및 제 18 조의 성과평가 지표를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2 조(이연지급)**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의 성과보수의 상당부분은 이연지급하며, 직위와 책임의 정도에 연동하여 성과보수의 비율은 증가되도록 설계한다.

**제 13 조(이연지급 기간 등)** ① 이연지급 기간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 및 효과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으로 하며, 이연지급되는 보수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은 기간별로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설계한다.

②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경우에는 이연 기간을 3년미만으로 축소할 수 있다.

③ 퇴직 시 잔여 이연지급액이 있는 경우, 잔여 이연지급액은 잔여기간에 따라 이연하여 지급한다.

## 보수위원회규정

**제 14 조(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당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등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보수의 재산정)** 당행은 지급확정기간 중 전체, 소속팀 및 개인의 업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 미확정 부분은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05. 29.>

**제 16 조(과도한 퇴직보수 제한)** 당행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과도한 퇴직보수로 인해 당행의 장기 가치창출 및 건전한 위험부담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제 4 장 공시 등

**제 17 조(연차보고서)** 당행은 관련법규에 따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 일 전부터 당행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보수위원회가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 제 5 장 성과평가 지표

**제 18 조(성과평가 지표)** ① 당행은 단기적인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한다.

② 당행은 장기성과와 수익성 관련 지표를 중심지표로 설정하여 최종 평가와 연계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당행의 특성에 맞는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 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아니 한다. 다만 건전성 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량화가 가능한 별도의 비재무적 지표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당행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경기에측 등에 맞게 임원의 성과평가 지표를 조정하여야 하며,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 보수위원회규정

---

1.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를 포함
2. 수익성 평가 시 단순한 절대 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성 평가지표를 적용
3.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순이익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을 제거한 영업이익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성과를 반영
4. 재무적 지표 이외에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규고객수, 고객만족도의 증진, 위험 관리 등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과 같은 인적 자원 지표 등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
5. 내부목표 달성 외에도 시장성과를 반영하는 등 금융회사간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

**제 19 조(규정의 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및 자구수정 등은 매니지먼트팀장(1 차 조직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0. 05. 29.>

### 부칙 (2017. 01. 0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1. 06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7. 02. 24)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2. 24 부터 시행한다. 단, 은행업 인가를 전제로 한 사항은 당행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9. 12. 2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1. 22 에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 13 조 제 3 항은 2019. 11. 21 에 소급하여 시행한다.

보수위원회규정

---

**부칙 (2020. 05.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6.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2. 2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3.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7.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7. 29.부터 시행한다.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소관팀: 인사팀(2 차조직)

2018. 10. 06 제정

2020. 03. 30 개정

2020. 05. 29 개정

2021. 02. 26.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이하 "당행"이라 한다)의 최고경영자(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경영승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행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표이사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경영승계 계획 수립)**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② 대표이사 경영승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대표이사 자격요건
2. 대표이사 경영승계 절차
3. 대표이사 후보자 선발 및 자격검증 방법
4. 대표이사 유고시 비상계획
5. 기타 경영승계에 관한 필요사항

**제 4 조(경영승계 계획의 점검)** ① 이사회는 매년 1 회 이상 대표이사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정기점검 외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이사회가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 규정을 포함한 경영승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대표이사 자격요건)** ① 대표이사는 당행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당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당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 6 조(경영승계 개시)** 경영승계 절차 개시 사유는 대표이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유고 등으로 한다.

**제 7 조(경영승계 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 6 조에 따른 경영승계 개시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표이사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1 인 또는 수인을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당행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대표이사 대행자, 당행 운영 및 대표이사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8 조(비상시 경영승계 절차)** ① 대표이사가 유고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이사회규정 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빠른 시일 이내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제 9 조(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검증한 후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당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 10 조(대표이사 추천 관련 공시)** 당행은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6.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 11 조(경영승계 지원)** ① 대표이사 경영승계 관련 지원 업무는

인사팀(2 차조직)이 담당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2. 26.>

② 인사팀(2 차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2. 26.>

1. 상시적인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대표이사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인사팀(2 차조직)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 2 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개정 2020. 05. 29., 2021. 02. 26.>

**제 12 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정은 당행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 폐지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8. 10. 0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0. 0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3. 3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3.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06. 0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2. 2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03. 01 부터 시행한다.



**End of Document**